

북한 핵문제관련 주요일지

(1993. 1. 1 ~ 11. 1)

1993. 11

통 일 원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93 T/S훈련실시 발표 ○ IAEA, 제6차 임시사찰 실시(1. 26~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물질 폐기장소로 추정되는 영변지역내 2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IAEA의 참관요청을 북한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 	
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교부, '93 T/S훈련실시 비난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NPT에 따르는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다고 함으로써 IAEA 핵사찰 거부를 시사 	
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해외정보부 프리 마코프부장, 대량파괴무기 확산 실태에 관한 보고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화학·생물학 무기의 개발 상황을 공개
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 '93 T/S 실시 발표 관련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S훈련이 실시되는 상황에서는 남북대화가 불가능함과 IAEA의 핵사찰도 불가능함을 언급 ○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모든 남북 대화 중단』 발표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교부, 남한 핵무기개발실태 관련 『비망록』 발표 - 핵무기 개발 및 미군 핵무기 반입실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강석주 북한외교부 부부장과 회담(평양) - 북한이 NPT준수와 모든 핵시설을 IAEA사찰에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러시아는 NPT 발기국으로서,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에 관여할 자격이 있음을 밝힘.
1.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제6차 IAEA 입시사찰중 영변근처(60Km지점) 핵물질 폐기 장소로 추정되는 2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IAEA의 참관 거부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1. 27자 외교부 성명을 UN안보리에 공식문건으로 배포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국무부, 논평 - 북한이 IAEA의 사찰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 IAEA이사회와 『한스블릭스』사무총장에 대해 『적절한 단계의 조치』를 촉구하고 - 효과적 국제사찰과 남북간 상호사찰의 필요성 강조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2. 7	<p>○ 북한 외교부 대변인, IAEA 『특별사찰』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사찰』을 자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문제로 규정, 이를 거부하고 - 핵사찰문제를 다른 군사·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 북한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강요한다면 『대응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 	
2. 9		<p>○ 미 국무부 대변인 『바우처』,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북한의 영변 근처 2개 시설에 대한 사찰거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함.
2. 10	<p>○ 『데이비드 키드』 IAEA 대변인, IAEA의 대북한 『특별사찰』 결정 및 『특별사찰 수락요구서』 발송사실(2. 10)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함께 『특별사찰』 및 북한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를 논의하기 위한 IAEA 『특별이사회』 소집에 대한 최종 결정이 2. 15까지 이루어 질 것임을 밝힘. * 『특별사찰 수락요구서』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 제출시한이 2. 15임을 의미 	
2. 12	<p>○ 북한,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특별사찰』 거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S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이 『NPT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다고 하고 	<p>○ 러시아 외무부 한국과장 발레리 예르몰로프, IAEA 『특별사찰』 지지 시사</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기 위해서는 『환경과 조건』이 구비되어야 함을 강조함. - 또 T/S를 실시하는 조건에서는 핵사찰을 순조롭게 받을 수 없음과 핵문제와 관련한 부당한 조치(특별사찰을 의미)를 강요한다면 『대응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힘. <p>○ 노동신문, 특별사찰 거부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IAEA를 이용하여 핵활동과 관련이 없는 『군사대상』에 대해 사찰을 진행하려는 것은 『심각한 군사·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 IAEA가 『제3국이 제공한 정보』를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특별사찰』에 이용할 권리가 없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 북한의 『군사대상』 등에 대한 부당한 사찰조치를 취하는 경우, 『응당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12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회견에서 “북한이 IAEA와의 타협을 거부한다면 핵사찰 문제는 UN안보리로 넘어갈 것이며,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해질 것임”을 강조
2. 15	<p>○ 『빈』 주재 김광섭 북한대사,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 방문 및 『특별이사회』 개최 유보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광섭』은 『한스 블릭스』 총장에게 북한 『최학근』 원자력공업부장이 2. 22부터 개최되는 IAEA 정기이사회에 참석, 북한의 입장을 설명할 것임을 밝히고 2. 18로 예정된 『특별이사회』의 개최 유보를 요청 	<p>※ IAEA 정기이사회 일정: '93. 2. 22~2. 26, 오스트리아 빈</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2. 15	<p>○ IAEA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 『특별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8로 예정된 『특별이사회』의 취소 및 동 문제를 2.22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92.4 북한이 IAEA에 제출한 최초 신고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중대한 모순』이 있음이 제6차 사찰결과 밝혀졌음을 발표 - “93.2.10 북한에 정식으로 요청한 『특별사찰』의 목적은 Sample과 측정상의 『중대한 모순』을 규명키 위한 것”이라고 발표 <p>○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 특별사찰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2개 장소는 『군사시설』임을 주장하고 - 만약 『특별사찰』을 결정할 경우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을 폐기할 수도 있음을 강조 	<p>※ IAEA가 북한 핵시설(물질)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금번이 최초임.</p>
2. 16	<p>○ 제네바주재 북한대사 이재열, 특별사찰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가 사찰을 요구하는 장소는 『군사시설』임을 주장하고, IAEA가 북한을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 - 만약 부당한 조치들이 강제될 경우 『자위를 위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2. 16	<p>○ 박동춘 주불 북한대사, 특별사찰 거부 발언</p> <p>-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누구든 권한도 없이 우리의 신성한 땅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돌 한개도 건드리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특별사찰』 거부를 명확히 함.</p>	
2. 19	<p>○ 최우진 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 『특별사찰』 추진관련 비난성명 발표</p> <p>- 우리에게 대한 『특별사찰』을 구실로 취해질 그 어떤 제재라는 것이 불피코 우리나라에서 충돌을 야기시키는 불집으로 되리라는 것은 더 논할 필요조차 없음.</p> <p>- 나는 우리에게 대해 『특별사찰』 소동을 벌이는 외부세력에 추종하여 돌격대행세를 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무분별한 책동을 반민족적 행위로 준열히 규탄함.</p> <p>○ 최학근 북한원자력공업부장, 오스트리아 빈 방문</p> <p>- (기간) 2. 19~2. 27</p> <p>- (목적) IAEA의 제6차 사찰결과 후 나타난 상이점 해명을 위한 세부협약(북한 기술팀 인솔) 및 특별사찰관련 IAEA이사회에서 북한 입장설명</p>	<p>○ 현승중 국무총리, 남북 기본합의서·비핵화공동선언 발표 1주년관련 담화문 발표</p> <p>- 북한 핵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 촉구</p> <p>※ 2.20, 2.21 두차례에 걸쳐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과 회담</p>
2. 21	<p>○ 최학근 원자력공업부장, IAEA 특별사찰 관련 『詳報』 발표</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2. 21	<p>- 우리에게 대한 특별사찰 결정은 미국의 '거짓정보'와 '조정'에 의한 것이며, 북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p> <p>○ 노동신문, IAEA 특별사찰 거부 논평</p> <p>- 『대국의 희생물이 되지말자』 제하 논평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특별사찰 소동은 바로 우리 민족을 희생시키는 댓가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대국들의 음모의 산물이며 만일 우리에게 그 어떤 특별사찰이나 제재조치가 강요된다면 그것은 북과 남을 막론하고 온 강토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는 위험한 도화선으로 될 것임”을 강조</p>	
2. 22	<p>○ IAEA 정기이사회 개막</p> <p>- 35개 이사국 참석하에 비공개리 진행, * 김계근(외교부 순회대사) 북한 대표단장 참석, 북한입장 설명</p> <p>○ IAEA 정기이사회 북한대표단 단장 김계관, IAEA 정기이사회 제1일 회의 연설</p> <p>- IAEA가 제기한 원칙적인 불일치점은 우리의 초기보고서와 기구의 사찰결과 사이의 원칙적인 불일치점이 아니라 우리 운영자들과 사찰단 사이의 『계산방법』과 『해석』 및 『평가』에서 생긴 차이점임.</p> <p>- 우리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핵활동과 관련이 없는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p>	<p>○ 김일성, 『사로청』 제8차 대회에 서한</p> <p>- 『청년들은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자』 제하 서한을 통해,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엄중한 사태와 그것을 계기로 하여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광란적인 반사회주의·반공화국 책동은 우리 혁명 앞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중</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2. 23	<p>* 제3국이 제공한 정보, 북한에 대한 사찰결과 공개 등을 비난하면서 『특별사찰 거부』를 표명</p> <p>○ IAEA 정기이사회 북한 대표단장 김계관, 제2일 회의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의 사찰결과와 우리의 초기보고서의 불일치를 해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대화과 협상』이며, 이는 기구 서기국의 의지와 입장여하에 달려 있음. - 만일 특별사찰에 대한 결의가 채택된다면 그 결과는 극히 엄중할 것이며, 핵활동과 관련없는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하겠다는 주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음. - 우리는 특별사찰시도를 단호히 배격할 것임. 나는 기구서기국이 특별사찰에 대한 주장을 당장 철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p>대한 임무』를 제기하고 있음”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현 상황을 『위기적 상황』으로 규정</p> <p>○ 모스크바 방송, IAEA 『특별사찰』 지지(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의심을 풀어내자면 남북한 상호사찰이 필요할 것임. 러시아의 입장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증명해 주었음. 한국 방문시 그는 “러시아가 남북을 핵무기 없는 지역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임.
2. 24		<p>○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 T/S훈련 실시 관련 공동기자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의 '93 T/S 실시 및 『특별사찰』 선동 비난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2. 25	<p>○ IAEA 정기이사회, 대북한 특별사찰 수락 촉구 『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해 IAEA 사무총장이 요구한 특별사찰을 수락할 것을 촉구 -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에게 본건의 조속해결을 위해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결의 채택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진전상황 보고 요청 - 이사회 의 본건 계속취급 및 IAEA-북한간 핵안전조치 협정 및 IAEA 현장상의 적절한 추가조치 고려를 결정 (별첨 결의안 전문 참조) <p>○ IAEA 정기이사회 북한 대표단장 김계관, IAEA 대북한 『특별사찰 수락촉구 결의안』 채택 직후 발언(회의석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가 압력과 강제를 통해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대한 결과(GRAVE CONSEQUENCE)를 가져올 것임. - IAEA가 북한에 적대적인 국가의 사주로 핵과 무관한 군사시설을 사찰하려는 것은 북한을 암살하려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동 결의안을 수락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불공정한 결의안 채택은 주권 침해이며 앞으로의 협정이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우리는 국가의 최고 이익(SUPREME INTEREST)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인 대응조치(COUNTER-MEASURE OF SELF-DEFENCE)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p>※ 동 결의안은 35개 이상국 중 한국·러시아·미국·일본 등 22개국이 공동발의하여 투표없이 채택, 중국·베트남·시리아·리비아 등 4개국은 표결 기권 의사 표명</p> <p>○ 모스크바 방송, IAEA 특별사찰 지지 논평(핵위험이 동쪽으로 옮겨지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량살육 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 인류에 대한 가장 위험한 도발과 도전으로 됨. 특히 동방 나라들이 그 핵무기 경쟁에 앞장서고 있음. -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전변시킬 회담도 아주 막다른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북한은 상호핵사찰을 내다보는 한국과의 회담을 포기하고 있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2. 25	<p>○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공동위 북측 위원장, 『T/S 훈련』 및 『특별사찰』 추진 중지 촉구</p> <p>* 인민문화궁전 공동기자회견</p>	<p>- 아시아 지역의 핵문제는 오로지 아시아국가 지도자들의 분별력과 책임성만이 이 대륙에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p> <p>○ 『제임스 울시』 미 CIA 국장, 상원 정부문제 위원회의 “대량살상무기의 세계적 확산에 관한 청문회”에서 북한 핵무기개발 관련 증언</p> <p>-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하여 핵무기 개발에 관여되는 증거를 은폐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무엇인가 숨겨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함.</p> <p>-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미 최소한 핵폭탄 1개를 제조하는데 충분한 핵물질을 제조하고 나서, IAEA에 대하여 은폐하고 있을 REAL POSSIBILITY임.</p> <p>- 우리는 영변의 2개 원자로가 PLUTONIUM 제조를 위해 건설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 북한이 IAEA의 사찰 요구를 수용·협조할 경우 북한의 핵개발센터인 영변핵시설의 핵무기 개발능력도 크게 제한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은밀하게 다른 곳에서 『소형 핵무기』를 개발할 우려는 여전함.</p>
93. 2. 26	<p>○ IAEA 정기이사회 북한대표단, 『특별사찰』 거부성명 발표</p> <p>-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시설은 핵과는 관계없는 군사시설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사회의 결의는 북조선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IAEA와의 협정준수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음.</p>	<p>※ 일본, 일본·북한 수교회담 대표 교체</p> <p>- 신임 『엔도 데쓰야』 대표는 UN주재 대사를 역임한 핵전문가임.</p>
2. 28	<p>○ 북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주년관련, 『정부비망록』 발표</p> <p>- 지금까지의 ‘남북대화’와 ‘통일과정’은 남측이 事大賣國 행위를 하는 조건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음.</p> <p>- 한반도에서 통일과정을 계속 추진시켜 나가려면</p> <p>첫째, T/S 훈련을 걷어 치워야 하고</p> <p>둘째, 남조선 당국자들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의 길에 나서야 하며</p> <p>셋째, 미국은 냉전시대의 낡은 대조선정책을 버려야 함.</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미국이 IAEA를 이용,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하려하는 것은 정세를 격화시키고 우리 제도를 압살시키려는 책동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형태의 압력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음. ○ 북한 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대북한 핵사찰 수용촉구관련 담화 발표 - 일본 당국이 우리가 특별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조 국교정상화』 교섭재개에 중요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하였음. - 우리는 애당초부터 일본의 그 어떤 압력을 받으면서 『조-일회담』을 하려고 생각해 본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일본측이 핵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오는 한 『조-일 회담』에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노』 일본 관방장관, 『일·북한 수교회담』 관련 북한에 IAEA 특별사찰 수락 촉구 - 일본과 북조선사이의 국교 정상화 교섭에 있어서는 북조선이 핵사찰 문제에 명확한 대응을 취할 것이 필요함. - 중단되어 있는 『일-조 교섭』 자체는 『2국간 협의』인 만큼 북조선이 교섭을 재개할 것을 밝혀온다면 재개하겠지만, 일본으로서는 교섭석상에서 핵사찰을 받아들이도록 거듭 주장하게 될 것임. ※ 수교회담석상에서 핵사찰 문제를 촉구할 것이나, 이 문제가 수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님을 밝힘.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3. 2	<p>○ 중국·러시아 주재 북한대사(주창준·손성필), IAEA 대북한 『특별사찰 수락 촉구 결의안』 채택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가 특정한 나라의 정보와 자료를 사찰에 이용한다면 앞으로 기구안에서 보다 더 비법적인 강압책동이 다른 구성국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릇된 전례가 마련될 수 있음. - IAEA가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노린 이번 결의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행위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접수될 수 없으며, IAEA의 금번 결의안 채택으로 핵담보협정 이행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음. - 우리는 IAEA가 우리에게 대한 부당한 결의를 당장 무효로 선언하고, 기구가 그 어떤 대국의 책동에 추종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함. - 만약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부당한 사찰조치를 기어이 취한다면 『자위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 	<p>※ '93. 2. 28 라오스, 요르단주재 북한대사도 동일내용의 기자 회견 실시</p>
3. 8	<p>○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T/S훈련 실시관련 『준전시 상태』 선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1993년 3월 8일 제0034호 평양, “전국·전민·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 1. 전국·전민·전국이 '93. 3. 9부터 준전시상태로 넘어갈 것. 2. 조선인민군 육해공군부대들과 조선인민경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동원대세를 갖출 것. 	<p>※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취임이후 최초 명령</p> <p>※ '93 T/S 야외 기동훈련: 3. 9~18</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93. 3. 9</p> <p>3. 10</p> <p>3. 12</p>	<p>3. 전체 인민들은 우리당의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무장,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 것.</p> <p>○ 북한, 김정일 『준전시 상태 선포』 명령을 UN안보리 공식 문건(S-25386)으로 배포</p> <p>○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장 강성산 총리, 김정일 『준전시상태 선포』 명령 지지담화 발표</p> <p>- 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이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새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데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애국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정당한 자위적 조치』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 환영함.</p>	<p>○ 중국 외교부대변인 『오건민』, T/S 훈련 반대 입장 표명(외신 기자회견)</p> <p>- 중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반대해 왔음.</p> <p>- 중국정부는 유관 각측이 조선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함.</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3. 12	<p>- 남조선 당국자들이 미국에 추종하여 있지도 않은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외세와 함께 동족살육전쟁연습을 강행해 나선 것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저버린 반민족적인 행위임.</p> <p>- 원래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이 진실로 『문민정치』를 하려 한다면 선임자들이 이미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핵전쟁 연습』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을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중지하는 결단을 내렸어야 할 것임.</p> <p>- 그러나 그들이 선임자들이 잘못 택한 전쟁마차를 그대로 타고 가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할 뿐임.</p> <p>우리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의 태도를 지켜볼 것임.</p> <p>○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제7차 회의, NPT탈퇴 결정</p> <p>- 회의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측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특별사찰 강요』로 우리나라에 긴박한 정세가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사태에 대하여 토의하였음.</p> <p>-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 담보협정을 발효시킨 것이, 남조선으로부터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며, 조선반도를 핵무기없는 지대로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하였음.</p>	<p>○ 한국, 북한 NPT탈퇴선언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p> <p>- NPT탈퇴성명 즉각 철회 및 IAEA 『특별사찰』과 『남북상호사찰』수락 촉구(별첨 성명전문 참조)</p> <p>○ 일본 외무장관, 북한 NPT탈퇴 철회촉구 담화발표</p> <p>- 금번, 북한중앙인민위원회가 NPT탈퇴를 결정한 것은 핵불확산체</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서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군사·정치적 문제로 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지적하였음. - 나라와 민족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특수한 사태』가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중앙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부터 자주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음. <p>○ 북한, NPT 탈퇴선언</p> <p>* '93 T/S훈련 실시 및 IAEA의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에 대해 NPT탈퇴를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무분별한 『핵전쟁 책동』을 준열히 규탄하며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의회의 『부당한 결의』를 단호히 배격함. -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기탁국들이 조선반도의 핵무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를 반대하여 핵위협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였음. - 그러나 미국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핵사찰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재개함으로써 핵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증대시켰음. 	<p>제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며,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한국, 미국 등 기타 NPT체결국과 협력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해 탈퇴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임. <p>※ 북한은 '93. 3. 12 김영남 외교부장 명의의 NPT탈퇴서를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과 유엔 『안보리』 現의장 T. C. O'BRIEN 유엔주재 뉴질랜드대사 앞으로 발송 (별첨 탈퇴서전문 참조)</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3. 12	<p>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영토안정과 자주권을 존중하며 핵위협을 중지할 데 대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이념과 목적에 전적으로 배치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선포함. -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 채동과 국제원자력기구 초대국안의 일부계층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임. -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초대국이 『독자성과 공정성의 원칙』으로 돌아설 때까지 달라지지 않을 것임. <p>○ IAEA 사무총장, 최학근 북한 원자력공업 부장앞 전문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규정상 탈퇴시 3개월전 사전통고 절차를 감안, 북한측의 NPT 및 안전조치협정상 의무는 계속 유효함을 환기 - 협정 유효기간 중에는 지난 2. 25 『이사회 결의』는 계속 유효하며, 기 요청한(3. 10) 『사찰팀 접수』를 요구 - IAEA와 북한간 『계속적인 대화』 희망 <p>○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NPT탈퇴에 대한 북한 정부입장 발표(대동강 외교단회관 내외신기자회견)</p>	<p>○ 미 국무부, 정레브리핑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이며, 미국은 IAEA의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함. - 동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음. (상정 가능성 시사) <p>○ 중국 외교부대변인, 논평 발표</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NPT에 가입한 목적은 동 조약에 가입해서 남조선에 있는 미국의 핵기지·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음. - NPT가입후 6년동안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치 않은 이유는 전적으로 미국에 그 책임 있음. 미국이 매년 핵전쟁 연습인 T/S를 실시하였고, 남한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전개하였기 때문임. 이 사실 자체가 NPT의 전적인 위반임. - 그래서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없을 때 서명한다고 한 것이며, 드디어 '92년도에 『T/S 중지선포』와 미국의 『한반도 핵철수』 및 남측의 『핵부재선언』이 발표되어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한 것임. - 우리는 우리에게 대항하는 국제적 캠페인에 대해 『모든수단』을 사용하여 대항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해왔으며, 한반도의 정세가 계속 긴장완화와 안정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함. - 현재 갑자기 돌출된 문제는 NPT조약의 『보편성의 원칙』에 합당한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 <p>○ 일본 외무성 대변인, 외신기자 회견을 통해 '91년에 시작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회담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p> <p>○ 러시아 외무부,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러시아는 침묵만을 지키지 않을 것임. - 북한은 동 문제에 있어서 IAEA와 『완전한 합의』에 도달해야 함.
'93. 3. 12	<p>○ 주중국 북한대사관, 입국비자 접수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3. 9이후 북한입국 비자접수를 『준전시상태』하에서 여행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이유로 거부 	<p>○ 러시아 외무부,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러시아는 침묵만을 지키지 않을 것임. - 북한은 동 문제에 있어서 IAEA와 『완전한 합의』에 도달해야 함.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3.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T/S중지』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청년 학생 공동 결의대회』 개최 - 『공동결의문』과 『공동선언문』 발표 - T/S훈련 저지투쟁 및 미국의 핵무기와 모든 침략무력(주한미군)의 즉각철수 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총련』 중앙상임위 부의장, NPT탈퇴 철회 가능성 시사(동경, 내외신기자회견) - 금번 북한의 NPT탈퇴 조치를 전면 지지함. - 단 하기사항 해결시 재고의 여지도 있음. ① T/S에 의한 핵위협 해소 ② IAEA의 공정성 및 독자성 확보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임형구 강원도 당 책임비서, 『최고사령관 명령』 관철을 위한 강원도 군중대회 연설 - NPT탈퇴 결정이 『김정일의 지시』였음을 언급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우리나라에 대한 IAEA의 핵사찰 진상에 대하여” 제하의 『외교부 비망록』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하원 외교위원장 Lee Hamilton, 성명 발표 -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핵확산 위협』임. - 북한의 NPT준수는 미·북한간 『관계진전의 전제조건』임.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3. 12자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의 대북한 전문에 대한 북한측 회신 접수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스 블릭스』사무총장이 제의(2. 26, 3. 10, 3.12)한 『사찰단 접수』는 불가함을 통보 - 모든 사태는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기인 <p>○ 이철 주제네바 북한대사, NPT복귀 가능성 시사(교도통신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T/S훈련 영구중지 ②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제거 ③ IAEA의 공정성 확보 <p>등의 조건이 이루어지면 『NPT재가입』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음을 언급</p>	
3. 17	<p>○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 소집공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93. 4. 7, 평양, 만수대 의사당 	<p>○ 미국-북한, 제30차 북경 참사관 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 탈퇴 후 최초의 접촉 <p>○ 중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북한의 NPT탈퇴 결정을 번복토록 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게 협력할 것인가? - (답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최근의 문제를 『은당하게』 다룸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긴장완화와 안정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3. 17		<p>○ 미하원 『세출위』 국방소 위 의장 John Murtha, 대북 군사제제 시사(기자회견)</p> <p>-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제한된 군사적 공격』을 해야할지도 모름.</p>
3. 18	<p>○ IAEA, 『특별이사회』 개최 및 『결의안』 채택</p> <p>* 이사회는 북한이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의 유효성과 북한의 동 협정 의무이행이 필수적이고, 긴급한 것임을 확인하는 『IAEA이사회 결의』(GOV/2638) 채택</p> <p>-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사무총장과 사무국이 취한 조치를 지지</p> <p>- 북한의 NPT탈퇴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AEA 안전 조치협정의 유효함을 확인</p> <p>-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대화와 노력을 계속하고, '93. 3. 31 개최될 『특별이사회』에 2. 25자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계속 보고해 줄 것을 요청</p> <p>○ 주유엔 북한대표부 『허종』 차석대사, NPT복귀 가능성 시사(마이니찌신문 기자회견)</p>	<p>※ 동 결의안은 IAEA 35 개 이사국중 22개국의 공동제의로 발의, 표결 없이 『전원일치』로 채택 (별첨 결의안 전문 참조)</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북, 미·북, 남북관계 등은 양자간 문제로서 팀스피리트훈련 종료 후 관계개선에 응할 수 있음. - 그러나 NPT탈퇴는 이와는 별개문제로, 미국과 IAEA의 자세변화가 없는 한, 재고의 여지가 없음. - 북한의 NPT탈퇴 재고조건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해소 ②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③ 한국내 미국 핵기지 공개 ④ IAEA의 공정성과 엄정중립 회복임. - NPT탈퇴는 북한의 자주권과 독립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임. - IAEA는 미국의 군사정보에 기초하여 북한 군사시설의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있음. - 미국은 전술핵을 철수했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음. <p>'93. 3. 18 ○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 비상확대회의, NPT탈퇴선언 관련 『호소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공화국이 NPT에서 탈퇴를 선포한 것은 전국에 『특수상황』이 조성되었거나 국가의 『최고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탈퇴를 허용하고 있는 『조약 제10조 1항』에 전적으로 부합됨. - 우리는 『국제종교기구』들과 각국의 『종교단체』들이 T/S 핵전쟁연습을 중지시키고, 특별사찰 결의를 철회시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동참해 나설 것을 호소함.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3. 19	※ 이인모 송환	<p>○ 미국-북한, 제31차 북경 참사관 접촉</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미국측 발표내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로는 북한과의 더 이상의 접촉계획은 없음. - 미국의 노력은 IAEA와 여타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임. <p>○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총국장, 『6국 긴급회의』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 안보전문가협의회』가 동북아지역에 구성된다면, 북한의 NPT탈퇴와 같은 지역 안보문제 협의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주장
3. 22	○ 북한 중·평방, 북한 전역에서 청년·학생·제대군인 등 150여만명의 『인민군대 지원 결의』 보도	
3. 23		<p>○ 중국외교부장 『전기침』, 『외교정책』에 관한 내외신 기자회견(북경, 인민대회당)</p> <p>* 북한 NPT탈퇴에 대한 『제제조치』에 반대 입장 표명</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3. 24	<p>○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할데 대한 명령』 발표</p> <p>※ 북한은 3. 12 NPT탈퇴선언 발표이후, 3. 15, 최대복 당비서 지지담화 3. 16, 『사민당』 지지담화, 『천도교 청우당』 지지담화 3. 17, 『직총』 중앙위 지지담화 3. 18, 『사로청』 중앙위 지지담화 등 각종 정당·종교 및 사회단체를 통한 NPT탈퇴 『지지담화』 발표 및, 3. 14, 『최고사령관 명령』 관철을 위한 강원도 군중집회 3. 18, 『최고사령관 명령』 관철을 위한 평안남도 군중집회 등 대규모 『군중집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문제로 UN안보리가 북한에 제재조치를 취하는데 반대하며, 동 문제가 IAEA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람. - 동 문제를 UN안보리로 확대할 경우 더욱 복잡하게 만들뿐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직 3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음. - 중국은 한반도의 어느 일방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또한 북한의 NPT탈퇴와 관련한 『그 어떤 제재조치』도 반대함. <p>○ 『클레르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자국의 1989년도 『핵폭탄 6개 제조』 사실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핵무기가 전임 『P. W. 보타』 대통령 지휘 아래 약 8억란드(미화 약 4억달러)의 비용으로 제조됐음을 인정 <p>○ 인도 외무장관 『디네시 싱』, NPT 서명 거부 (인도의회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는 지극히 차별적이며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사이에 영원한 분열을 노리는 것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부주석 이종옥, 『김일성 특사』 자격으로 서남아시아 3국 순방(3. 25~4. 3) - (순방국) 인도·네팔·방글라데시 (목 적) NPT탈퇴와 특별사찰 거부입장에 대한 지지확보 * 이종옥은 3. 26 인도대통령 방문시 김일성 친서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무장관 『워렌 크리스토퍼』,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 및 『제재조치』 실시 전망 (미하원 세출소위원회 발언) - 미국은 북한의 NPT탈퇴와 계속적인 핵사찰 거부행위를 심각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를 강력히 지지함.
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신문, 『미국의 핵위협은 제거되어야 한다』 제하 논설 -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시급히 제거되어야 함. 이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완화하고, 전쟁을 막으며, 아시아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절실한 문제임. -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이 해소되자면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T/S훈련)이 중지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되어야 함. 또한 남조선에서 모든 핵전쟁 수단들이 철수되어야 함. - 미국이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영원히 제거할 때, 조선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큰 진전이 이룩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제재조치』는 일차적으로 식량 및 석유, 천연가스, 원자재 수출입 규제가 고려되고 있음. - IAEA는 3월 31일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되어 있음.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승주 외무부장관, 북한 NPT탈퇴 철회시 “T/S훈련 영구 중지 검토” 발언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3. 29	<p>○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발표</p> <p>※ 북한 핵문제의 UN안보리 상정 비난 및 『조·미 협상』제의 최초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하루빨리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군대를 철수시키며, 핵위협(T/S훈련)을 그만두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핵불사용 담보』를 공약하여야 함. - 이를 위한 상책은 무엇보다도 『조·미사이에 서로 신뢰가 보장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봄. - 만일, 우리의 핵문제를 부당하게 유엔안보리에 상정시키고, 우리에게 계속 압력을 가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응한 《강력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p>(방미중 메디슨 Hotel 수행기자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제재조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임. 경제제재 이전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은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임. - 현 단계에서는 『군사 제재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이 NPT탈퇴를 철회할 경우 『T/S훈련의 영구중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3. 29	<p>○ 노동신문, “미국은 결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하 논평을 통해 미국·북한간 『직접협상』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의 탈퇴는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T/S훈련등) 및 핵사찰 압력책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NPT탈퇴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음. 그러므로 우리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미국은 책임있는 당사자가 되지 않을 수 없음. 불집을 일으킨 『당사자가 책임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임. - 미국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의 핵문제를 『강권』으로 해결하려하거나 『국제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미국에도 유리하지 않을 것임. - 앞으로 사태의 진전여부는 『조·미협상』이 실현되는가 못되는가, 미국이 얼마나 책임지는 입장에 서는가 서지 않는가 하는데 달려있음. - 만일, 미국이 책임지는 입장에서 성근한 자세로 『조·미협상』에 나온다면 사태는 옹계 해결될 수 있을 것임. <p>○ 주러 북한대사 손성필, 3. 29자 외교부 대변인 담화관련 『타스』통신 기자회견</p> <p>* 내용은 3. 29자 외교부 대변인 담화 (조·미 협상제의)와 동일</p>	<p>○ 『핵공급국Group』,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3.29~4.1, 스위스 루체른, 28개 회원국 참가, 『핵개발 범용품목 이전지침』 시행 문제 등 핵수출 규제 강화문제 논의 <p>※ 핵공급국Group:(Nuclear Supplier Group) '78. 1 미·소·영·불·독·캐나다·일본 등 7개국이 인도의 핵실험('74. 5) 등과 관련 핵확산방지를 위한 『핵기술·물질 수출규제지침』 (런던 Guide Line)마련을 계기로 구성된 비공식 협의체</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3. 30	<p>○ 노동신문, 『경제제재』 비난 논평 (그 어떤 제재도 통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그 어떤 제재로 흔들어 보려는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임. 우리 인민은 그 어떤 『경제제재』도 두려워 하지 않음. - 그 어떤 봉쇄나 제재로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려한다면 우리는 미국은 물론 그에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조치》로 대답할 것임. - 외세에 빌붙어 민족의 운명을 우롱하려는 남조선 당국자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함. 그들은 그 무슨 봉쇄요, 제재요 하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한다면 결코 무사치 못할 것임. 	<p>○ 모스크바방송, 한승주 외무부 장관의 『T/S 영구중지』 발언(3.28) 관련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한국이 T/S 군사연습으로 평양의 핵사찰 수락을 얻어내고자 한 것이 그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지역내 정세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임. - 임의의 강요적 조치를 배격하면서도 평양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회담과정에 양국은 의견차가 있는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고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임. - 반면에 힘의 행사로 정치적 그 무엇을 해결해 보고자하는 시도는 전망성이 없고 또 아주 위험한 것임. <p>○ 중국외교부 대변인, 북한 핵문제 관련 기자회견</p> <p>(3.25 미국무장관 『워렌 크리스토퍼』의 대북한 제재조치 시사발언 관련)</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3. 31	<p>○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특별이사회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행위를 핵안전조치협정상 ▲ 협력의무(제3조), ▲ 이사회결의 이행의무(제18조), ▲ 특별사찰 수용의무(제73조, 77조), ▲ 임시사찰 수용의무(제71조)의 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이에따라 IAEA가 북한 핵물질의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로의 비전용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상황을 보고 <p>○ 『빈』 주재 북한대사 김광섭, IAEA 특별이사회 발언을 통해 『안전조치협정 이행 용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사찰은 외부의 정보제공에 근거한 것으로 수락할 수 없음. - 금번 이사회시 우리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을 규정한다는 소문이 있는 바, 이는 협정상 근거가 없으며, IAEA-북한간 상이점은 2개 미신고장소 사찰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해명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과 IAEA간의 문제는 쌍방의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어야 함. - 제재조치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 <p>○ 『이붕』 중국총리, 북한 핵문제의 UN안보리 상정 반대(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될 경우,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 (답변) 중국과 북조선은 장기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NPT에 가입했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핵확산을 지지하지 않고 동시에 조선의 남쪽 또는 북쪽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만이 조선반도의 정세가 안정될 수 있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앞으로도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위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 <p>○ 김광섭 『빈』 주제 북한대사, 『임시사찰 수용 용의』 발언(현지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자국의 핵시설들을 IAEA가 사찰하도록 『임시사찰단』을 받아 들일 용의가 있으며, - IAEA와 이 문제에 대한 『회담』을 시작할 용의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북한은 『안전한 주권국』으로서 북한과 IAEA간의 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며, 만약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경우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 <p>○ 모스크바방송, 『조선반도의 위기상태:긴장상태 완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제하 논평을 통해 북한입장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는 평양부근의 군사시설들을 폭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울려나오고 있음. 그러나 이런 극단조치들은 국제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항상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음. - 제재에 대해 말한다면 모두가 그것을 지지하지 않으며, 북조선의 경우 중국이 제재 조치들을 반대하고 있음. - 그리고 서울도 워싱턴도 평양이 한국에 미국 핵무기가 있다는 의심을 가지도록 하지 말아야 하며, 조성된 상황으로부터의 유일한 출로는 『상호간 회담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사찰문제의 UN안보리 상정 결의안(GOV/2644)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을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국』으로 규정 - 북한 핵물질의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로의 비전용 여부의 검증이 불가능함을 확인 - 특정 추가정보 및 2개장소에 대한 지체 없는 접근허용 및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의 즉시시정 촉구 -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및 총회에 보고 결정(별첨 결의안 전문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외무부, IAEA 결의안 채택에 대한 논평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의 UN안보리 및 총회보고 결정에 대한 지지 표명 - NPT 탈퇴결정 철회 및 IAEA 특별사찰 수락 촉구 ○ 러시아·미국·영국, 대북한 공동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1자 IAEA 결의안 채택 지지 및 안전조치협정의 이행과 NPT 탈퇴 철회를 촉구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신문, 한승주 외무부장관 방미관련 논평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문제는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온 남측과 미국, 그리고 IAEA 일부계층의 행동이 부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 이 문제를 북남사이에 채택·발효시킨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민족안에서 해결》하며, 조선반도에서 현실적 위협으로 되는 남조선의 미국 핵무기와 핵기지를 철수·철폐시키고, T/S 핵전쟁연습도 중지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남조선 통치배들이 제국주의 반동들의 특별사찰 소동에 들켜대 노릇을 한 것은 반민족적 범죄행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IAEA 대북한 결의안 채택(4.1)관련 『협상이야말로 조선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로이다』 제하 논평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미국이 응당 한국으로부터 핵무기와 군대를 철수하고 핵위협을 포기해야 하며 강권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국제화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조-미 쌍방이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반동들이 그 어떤 봉쇄나 제재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려 한다면, 우리는 미국은 물론 그에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조치》로 대답할 것임.</p>	<p>『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을 통해서 조선의 핵문제를 해결할 데 대해 호소하고 있음.</p> <p>- 북한은 중국의 인방이며 중-조 두나라는 장기간에 걸쳐 친선협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중국은 조선북측이던지 남측이던지 막론하고 핵무기가 존재하지 말아야하며 이래야만 조선반도 정세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함.</p> <p>- 조선의 핵문제는 응당 인내성 있게 해결해 나가야 함. 이 문제를 UN안보리 토론에 넘긴다고 해서 순조롭게 해결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움.</p> <p>- 조선의 핵문제는 조선과 IAEA 및 해당국들 사이에 진일보한 《협상》을 통해서 해결돼야만 함.</p> <p>《협상》이야말로 조선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로임.</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사회당 대표단, 방북(4. 2~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구보 와타루』 사회당 부위원장, 『후카다』 사회당 조직국장 - (목적) NPT탈퇴 철회 및 IAEA특별사찰 수락 촉구 * 4. 4 최태복, 김양건과 회담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회담은 유일한 출로이다』 제하 모스크바방송 논평을 통해 『미·북한 직접협상』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봉쇄』는 1950~53년간 조선전쟁이래 사실상 존재해 오고 있으며, 또한 북한에 대해 『군사작전』까지 내다보는 것은 『국제법에 완전히 모순』되는 행위임. - 1991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가 구현되고 있지 않는 사실에 대한 책임은 남북이 똑같이 져야할 것임. - 극도로 긴장된 이지역 사태는 폭발위험까지 약속해 주고 있으며, 요즘 진행한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그 긴장악화의 이유 중 하나로 됨.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4	<p>○ 북한 외교부 대변인, 남아공화국 핵무기 개발 관련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략) 그런데 여기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IAEA의 《양면적인 이중 기준 정책》임. - 미국은 조약상 의무를 어기고 국제공동체를 기만하면서 남아공화국에 핵기술을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적극 도와 주었음. - 또한 국제원자력기구는 남아공화국에 대해 《115차례의 사찰》을 진행하면서도 그 핵무기 개발에 대해 말한 바가 없다가 단 6차례의 사찰로서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핵의혹 딱지를 붙이고 특별사찰을 강요해 오다가 이제와서 담보협정 불이행의 딱지를 씌워 UN에 넘기는 부당한 결의를 채택한 것임. - 이러한 행위는 확실히 IAEA가 독자성이 없이 미국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충돌에서의 유일한 출로는 『상호대화』임. 그 회담은 『동등권』과 『상호존중』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임. - 조선문제를 논의할 때 유엔안보리도 의제에 《미국과 북한사이의 회담문제》를 상정시키게 될 것임. <p>○ 미국-러시아, 『뱅크버 정상회담』 개최(4. 3~4. 4)</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공동성명내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동반자관계 선언 - 미국의 대러시아 16억 1,200만불 경제원조 -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 NPT를 범세계적으로 무기한 적용 • 특히 북한에 대해 안전 조치 협정 의무의 전폭적 이행과 NPT탈퇴 철회를 촉구 - 군축협상의 조기타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단계 START- I, II 의 비준 및 완전이행에 노력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5	<p>며,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증해 주고 있는 것임.</p> <p>○ 북한 외교부, IAEA의 북한 핵문제 유엔 상정 결의안 채택(4. 1)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IAEA 관리 이사회 회의의 결의가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배격, 단죄함. -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를 선포한 다음에도 담보협정에 따른 자기의 의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특히 이번 회의를 앞둔 시기에도 기구와 우리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협상을 할 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그러나 우리의 『협상제의』는 유감스럽게도 거부당하였음.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전례없는 일임. - 우리가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담보협정 불이행으로 될 수 없으며, 우리는 담보협정에 따르는 비정기 사찰을 언제한번 반대한 적이 없음. - 이른바 우리의 핵문제는 본질상 우리나라와 IAEA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과 미국사이의 문제』임. <p>따라서 이 문제는 UN 무대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며, 우리와 미국사이에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담보협정에 따르는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며,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시종일관함. - 유엔 『안보리』가 그 어느 대국의 의사를 대변하여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 어떤 집단적 제재를 하려한다면 우리는 《대응한 효과적인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p>○ 노동신문, 『2중기준 적용은 묵과될 수 없다』 제하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남아공화국과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도와주었으며, 이러한 NPT조약 위반에 대해 IAEA가 묵인해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조종에 의해 IAEA가 북한에 대해 《불공정한 2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 	
4. 6	<p>○ 북한, 일본 사회당 대표단과 회담에서 『미국과의 직접협상』 및 『IAEA 임시사찰』 수용 제의(4. 6 『구보 와타루』 사회당 부위원장 북경공항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유엔을 대화의 장소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생각하고 있음. - 북한측은 IAEA가 특별사찰 요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하여 “다시한번 임시사찰로써 동일한 조사를 했으며 좋겠다. IAEA측의 계산에 잘못이 있고, IAEA도 미스를 인 	<p>○ 『군정위』 북측 비서장,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국의 『T/S훈련 참관 초청』관련 유엔사측 비서장 앞 항의편지</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6	정하고 있다”고 답변, 임시사찰 수용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음.	○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위원장 김용순, 서구 3개국 순방(3. 25~4. 6)
4. 7	<p>○ 주러 북한대사 손성필, 『프라우다』 신문 기자회견</p> <p>- 북한의 NPT탈퇴가 미국의 핵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미-북한 직접협상』 주장 및 미국의 제재조치가 있을 시 『상용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p> <p>○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 개최</p> <p style="text-align: center;">5개 의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 대단결 강령을 채택할 데 대하여 2. '9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9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 『지하자원법』을 채택할 데 대하여 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들을 승인함에 대하여 5. 조직문제 	<p>- (순방국) 스웨덴·덴마크·이태리 (목 적) NPT탈퇴에 대한 지지확보 (결 과) 3국 모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지지 획득에 실패</p> <p>- 김용순의 서구 3국 순방은 NPT탈퇴선언(3. 12) 이후 서방국에 대해 최초로 이루어진 고위급 방문외교임.</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강성산, 제1의안에서 한 보고</p> <p>1.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의한 통일 재확인 ②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정책 배격(주한미군 철수) ③ 통일지상주의 원칙 ④ 북한체제에 대한 불간섭 보장(핵문제·인권문제·세습체제 등의 거론차단) ⑤ 북한에 대한 불가침보장 및 흡수통일 봉쇄(T/S등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⑥ 국가보안법 철폐 및 반공정책 포기 ⑦ 민간급 수준의 『남북경협』 추진 보장 ⑧ 대북창구일원화 폐지 및 『정치협상회의』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화·접촉 추진 ⑨ 『범민련』 허용, 『통일전선』 형성 ⑩ 『통일·애국인사』 활동 보장 <p>2. 남조선에 대한 4가지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세의존정책 포기 ②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의지 표명 (당장 미군을 철수시키기 어렵다면 미군을 조건없이 철수시킬 의지라도 명백히 할 것) ③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 영구중지 ④ 핵문제에서의 자주적 입장견지와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취할 것 	<p>※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과 『남조선에 대한 4가지 요구』 및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7	<p>○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대북한 회담 제의(로이터 통신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회담』을 할 것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하고 있음.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NPT에 다시 가입하고 핵시설을 국제사찰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협조해야 함. 	
4. 8	<p>○ UN안보리의장, 대북한 성명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의 중요성과 NPT 가입국들의 조약 준수 중요성 재확인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표명 - IAEA와 북한간 협의계속 촉구(별첨 성명전문 참조) <p>○ 북한 원자력공업부장 최학근, IAEA 특별이사회 결의안 채택(4. 1)관련 규탄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관리이사회에서 채택된 지난 2. 25, 3. 18, 4. 1의 결의는 있지도 않은 불일치와 날조된 정보자료에 기초하여 조작된 것으로 담보협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배격함. - 우리는 NPT탈퇴 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앞으로 3개월간의 담보협정의무를 이행하려는 입장으로 부터 지난 3. 30 이와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IAEA측에 명백히 제기하였음. 	<p>○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북한 핵사찰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북한 핵사찰 문제와 관련 중국정부는 유관각측이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주장함. -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 한층 효과적인 것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은 우리의 핵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IAEA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이 기구규약과 담보협정을 악용하기 위해 공모결탁한 데 대하여 응당히 문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주미 신임대사에게 『이도에』 임명 ※ 북한, 4. 5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UN안보리에 서한으로 배포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선출 ○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핵사찰관련 대일본 규탄담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 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게 하는데서 돌격대 역할을 하였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NPT에서 탈퇴하는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장본인의 하나임. - 일본 당국자들이 우리의 핵문제가 바로 조-미사이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증빨나게 행동하는 것은 저들의 군사대국화·핵무장화의 합법적 구실을 마련해 보자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님. - 일본이 우리의 교전일방인 미국의 편에서서 계속 분별없이 행동한다면 조선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에서 예측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일본도 결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스크바 방송, UN안보리의장 성명(4.8) 관련 논평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의 핵안전 문제가 급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임. - 그러나 이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에만 관계되지 않으며, 서울의 모든 핵계획과 관계되는 모든 것도 전면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한국의 미군사 기지에도 주목을 돌려야 할 것임. - 평양은 아직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있다고 간주하고 있음. 그러므로 이 문제에는 북한, 미국, 한국 등 적어도 3국이 관계가 있는 것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10	<p>○ 북한 외교부 대변인, UN안보리의장 성명 (4. 8)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수차 천명한 바와 같이 핵담보협정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입장도 시종일관함. - 우리는 지난 3월 30일에도 국제원자력기구에 담보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협상을 거듭 제기한 바 있음. 우리는 이제라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가 담보협정을 불이행한다고 날조해 낸 부당한 결의를 철회하고 우리의 《협상제의》에 응해 나오기를 바람. -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증대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장본인은 미국이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담보협정을 악용하도록 조종한 것도 미국인 것만큼, 이 문제의 종국적 해결여부는 《조-미 협상》에 달려 있음. -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와의 《협상》에로 나섬으로써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실천적 대책을 취하는 것임. 우리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현 사태의 요구와 국제적 정의의 원칙에 맞게 올바르게 처신함으로써 조선문제 처리에서 오점을 남겼던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되기를 기대함.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12	<p>○ 손성필 주러 북한대사, IAEA와의 『협상 용의』 표명(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현상황에서 귀국은 가까운 시기,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IAEA와 회담을 재개할 예정인가? - (답변) 우리는 지금도 IAEA가 우리가 핵담보협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의를 철회하고, 우리와 진지하게 협상 하자고 하면 협상하겠다는 것을 계속 제기하고 있음. - 우리는 3.30에 이미 핵담보협정이행과 관련해서 『협상』하자는 것을 원자력공업 부장의 편지로 IAEA에 제기했음. 	
4. 13	<p>○ 노동신문, 『UN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제하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핵문제는 UN에서가 아니라 우리와 미국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임. 그것은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탄생시킨것도 미제이고, 우리가 NPT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없게 방해하고 우리의 조약탈퇴 사실을 빚어낸 것도 미국이기 때문임. - 우리나라와 UN과의 비정상적인 과거는 아직 청산되지 못한 상태임. - 만일 우리에게 대한 그 무슨 압력을 가하려 한다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UN 역사에 새로운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될 것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14		<p>○ G7외무장관회의(4. 14 ~15, 東京), 북한 핵문제 관련 합의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제사회는 북한의 NPT탈퇴결정 철회 및 IAEA 특별사찰 수용을 위한 설득에 주력해야 하며, - 이를 위해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중요하고 - 북한의 NPT 복귀불응 시에는 적절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며 - NPT체제의 유지를 위해 IAEA의 사찰과 제재부과권환을 강화해야 함.
4. 15	<p>○ 북한, 4.10자 외교부대변인 담화를 UN안보리 공식문건(S-25595)으로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10자 외교부대변인 담화는 4. 8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해 『미·북한간 직접 협상』 및 『IAEA·북한간 협상』을 강조 	<p>○ 러시아 외무장관 『안드레이 코지레프』, 대북한 제재조치 가능성 시사 (G7 외무장관회담 후 NHK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는 여러 외교 채널을 이용하여 북한에 NPT탈퇴 철회를 유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16	<p>○ 제89차 IPU인도총회 북한 대표단 단장이용호(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서기장)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NPT를 탈퇴한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기인함. -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는 본질상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의 문제이며, 따라서 IAEA나 그 어떤 다른나라나 그 누구도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 우리와 미국사이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임. <p>○ IAEA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 대북한 電文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변핵시설에 대한 감시장치의 작동여부 확인을 위해 4~5명의 사찰단 파견을 제의. - IAEA는 사찰단의 방북기간을 5. 4~5. 17로 계획, 4. 28 이를 북한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서 원자탄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이는 극동지역의 안정에 위협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p>○ 미·일 정상회담(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린턴과 미야자와 수상은, 북한의 NPT 복귀와 핵개발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노력에 합의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17	<p>○ 『사회주의 옹호위한 평양선언』(92. 4) 1주년 평양시 기념 집회 개최(당비서 최태복 연설)</p> <p>-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보루인 공화국에 공격의 예봉을 들리고 핵문제를 UN에 넘겨 제재를 운운하고 있으나 우리의 존엄과 주권을 건드린다면 『단호한 자위적 조치』로 대응할 것임.</p>	
4. 21	<p>○ 북한 외교부 대변인, 『미·북한 고위급 접촉』 관련 기자회견(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최근 미국무성 대변인이 조·미 고위급회담 의향을 밝힌 것이(4. 22 논평)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p> <p>- 조·미 회담이 이루어지면 핵문제를 비롯하여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이 토의될 것임.</p>	<p>○ 『리스크시』 주한 미군 사령관, 美上院 軍事委 聽聞會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 한반도 안보정세 증언</p> <p>- 미국은 북한이 최선의 타협책으로 核Card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자신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p> <p>- 과거 북한 우방국들의 안보지원이나 주요물자공급 등을 통한 대북통제가 이제는 불가능함.</p> <p>- 북한 권력체제 이양에는 군부의 지지가 절대적이나 북한군부가</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21		<p>金正日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金正日은 '92년 대규모 將軍進級 人事에 이어 '93년도 T/S훈련時에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자신의 책임하에 마련하는 등 軍部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 『한·중 외무장관회담』 개최(방콕, ESCAP총회)</p> <p>- 중국 『전기침』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정착 및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희망하고, 미·북한간 대화 가능성에 적극적 환영의사 표명(단, 미·북한 대화에 있어서 중국의 간접 역할은 가능하지만, 직접적 중개자 역할은 불가능함을 언급)</p> <p>- UN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문제는 외교적 노력이 계속중인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93. 4. 22</p>	<p>○ 『카이로』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익명), 북한이 NPT 탈퇴철회를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했음을 언급.</p> <p>* 연합통신 전화회견</p> <p>○ 주유엔 북한대표부 박길연 대사, NPT탈퇴 철회결정 부인</p> <p>* 유엔본부 현지 한국기자단 회견</p> <p>-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IAEA의 엄정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지난 3월 NPT 탈퇴당시와 입장변화가 없음.</p> <p>- 그러나 우리는 NPT를 존중하며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는 되어 있음.</p>	<p>- 안보리 제재조치시 중국의 어려운 입장 설명 및 안보리 1차결의 채택 이전 미·북한간 대화를 희망</p> <p>- '93. 5월하순 『전기침』 외교부장의 방한의사 표명</p> <p>○ 미국부 정무차관 『피터 타노프』,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한간 고위급 접촉』(次官級) 가능성 언급</p> <p>* 방한 중 김영삼 대통령 예방시 발언</p> <p>○ 『리처드 바우처』 미국 무부 대변인, 『미·북한간 고위급 접촉』 관련 논평 발표(정례브리핑)</p> <p>-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불이행 및 NPT탈퇴 선언으로 야기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회담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취해진 바 없음.</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22		<p>○ 통일원 대변인, 북한 NPT 복귀설 및 타노프 차관 발언 관련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북한은 남북 간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음. - 북한은 『미·북한간 고위접촉』이라는 종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 핵문제 해결을 통한 긴장완화에 기여하리라고 믿음. <p>○ 모스크바 방송, 『조선반도의 비핵군사화 문제』 제하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말한다면 러시아는 모든 영향력을 이용하여 평양으로 하여금 NPT에서 탈퇴하지 않게 설득시킬 예정임. - 북한과 공동 국경선을 갖고 있는 러시아에서 이것은 최우선적 관심사로 됨.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건민』 중국외교부 대변인, 『미·북한 직접 협상』 통한 핵문제 해결 강조(내외신 기자회견) -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환영을 표함. 조선의 핵문제에서 가장 직접적인 것은 북한과 미국, 북한과 IAEA, 조선 남북쌍방간의 문제임. - 우리는 해당각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할 것을 희망함.
4.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민군 창건 6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겸 총참모장 최광 보고) - 이제 우리 공화국에 대해 외부세력들이 그 어떤 강압적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속에 몰아 넣는 새로운 도화선으로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겨레는 분열의 비극위에 열핵전쟁의 참화까지 입게되는 민족적 대참변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 미국과 국제반동들이 오늘도 의연히 핵문제를 걸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공화국을 고립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시대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착오적인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그 어떤 압력이나 강권행위도 결코 우리 인민을 놀래울 수 없으며, 그 어떤 위협과 공갈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어느때 어느 대국의 의사를 대변하여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 어떤 제재를 하려 한다면, 우리는 대응한 《효과적인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p>'93. 4. 24 ○ 노동신문, 러시아 외무장관의 대북한 제재조치 발언(4. 15) 비난 논평</p> <p>(제목 : 제 할일이나 바로 해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국 러시아는 우리를 압살하려는 미국과 한짝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미국과 합세하여 우리에게 대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임. - 우리는 이미 그 누구의 품에도 놀지 않으며, 그 어떤 압력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음. - 러시아는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제 할일이나 잘하는 것이 지금의 처지를 개선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p>4. 27 ○ 박吉淵 주유엔 북한대사, UN안보리 의장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IAEA와 협의중이며, 관련 당사국들과도 협의할 용의가 있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28	<p>○ 최학근 북한 원자력공업부장, IAEA 사무총장 앞 전문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변지역내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거부입장 재확인 - 영변 핵발전소내의 안전조치 장비의 점검 및 교환을 위한 IAEA 사찰단의 방북 허용 통보 - IAEA와의 《협상》을 위해 『빈』에 북한 대표단 파견 통보 	<p>※ Hans Blix IAEA 사무총장은 같은 날 5.4~17간 임시사찰단을 방북시킬 예정임을 북한에 통보</p>
4. 30	<p>○ 북한, 5·1절 경축 중앙보고회 개최 (당비서 최태복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인민은 주체사상으로 무장, 수정주의와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해야 함. -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가 제시한 4개항에 호응하는 용단을 내리고 국가보안법과 파쇼악법을 철폐하며, 폭압기구 해체와 애국인사들을 석방해야 함. - 미국은 핵무기를 지체없이 철수하고 IAEA를 통해 우리 내정에 간섭하거나, 국제적 제재를 가해 보려는 행위를 걷어치우고, 『朝·美 회담』에 성실하게 응해 나와야 함. 	
5. 1	<p>○ 북한 외교부 대변인, UN안보리 4개 상임이사국의 대북결의안 초안 작성 관련 중앙통신 기자회견</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93. 5. 3</p>	<p>○ 金基龍 북한 공보위원회 위원장, NPT 조 건부 복귀 발언(말레이시아 『베르나마 통 신』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문제는 《조·미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으로, 우 리는 결실있는 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 으며,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문 제를 기본으로 하여 호상 관심사를 토의 할 수 있음. - 그러나 UN 안보리에서 지금 내들리고 있는 것과 같은 온당치 못한 결의초안이 채택된다면 그것은 최근의 《조·미 회담》 및 《IAEA와의 협상추진》 등 긍정적 협 상 분위기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임. - UN 안보리가 어제는 협상의지를 천명하 고 오늘은 협상의 길을 가로막는 결의를 채택한다는 것은 모순적 처사로서 안보 리가 경솔하게 처신하는 경우 UN의 영 상에 《치명적인 부정적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①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② 우리의 군 사시설들이 사찰을 받지 않는다는 담보 및 ③ 남한으로 부터 모든 핵무기를 철수 하고 ④ IAEA가 미국의 도구가 되는 대 신 공정하고 중립적이기를 희망함. - 우리는 미국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 킬 경우 NPT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 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5. 4		<p>○ 강택민 주석, 핵문제 관련 對북한 경제제재 반대</p> <p>(訪中 日本 『고토다 하루마사』 부수상 및 『오부치 게이조』 前 자민당 간사장과 회담)</p> <p>-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으나 內政問題에 있어서는 불간섭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생각처럼 잘 돼지 않을 수 있음.</p> <p>- 북한의 NPT 탈퇴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이란 제재』는 모순을 격화시킬 뿐임.</p>
5. 5		<p>○ 미·북한 『제32차 북경 참사관 접촉』 개최</p> <p>- 북한 핵문제 관련 『미·북한 고위급접촉』 개최 문제 사전 협의</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93. 5. 11</p>	<p>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 될 수 있음. 반대로 긴장을 격화시키면 종당에는 무력충돌까지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 주고 있음. - 미국의 강권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결의의 채택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예측할 수 없는 사태까지 빚어낼 수 있음. <p>○ 주UN 북한대사 박길연, UN 안보리 대북 결의 채택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문제는 마땅히 우리나라와 미국사이의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 우리는 본 결의를 절대로 접수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배격한다는 것을 명백히 천명함. - UN 안전보장이사회도 본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자기사업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상실하였으며, 『안보리』에 대한 발전도상 나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음. - 본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일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압력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한 고위급회담』에 있어 미측 입장은 ① 북한 핵문제만이 의제로 상정 ② 대화과정에서 한국측과 긴밀한 협조 ③ 안보리대북결의안 채택이후 보다 중요한 역할은 남북당사자간 대화에 의하여야 함.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5. 11	<p>○ 김일성, UN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 비난 (짐바브웨공화국 『로버트지 무가베』대통령 환영만찬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우리인민은 외부의 압력과 도전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발전시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음.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있지도 않은 핵개발에 대한 의혹소동을 벌이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을 고립시키고 압살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음. - 미국은 냉전시대의 낡은 관점을 버리지 않고 계속 힘의 입장에서 우리의 핵문제를 UN무대에 끌고가 그 무슨 결의를 채택하는 놀음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일임. -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강권행위나 강압조치도 통할 수 없으며, 우리 인민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 - 그 누가 우리에게 분별없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서 우리 인민의 《응당한 반격》을 받게 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예측할 수 없는 후과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이 역사 앞에 책임지게 될 것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5. 12	<p>○ 북한 외교부 대변인, UN 안보리 대북 결의 채택 비난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UN 안보리 결의가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배격함. - UN 안보리를 통한 미국의 부당한 양면 정책으로 하여 우리와 IAEA 사이의 협상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게 되었음. - 만일 UN 안보리가 이번 결의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대한 그 무슨 제재와 같은 부당한 압력 책동을 끝끝내 강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음. -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발생시킨 기본장본인도 미국이며 이번 결의를 채택하는 데서 기본발기국으로 나선 것도 미국임. 그런 만큼 미국은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 	<p>○ 駐UN 中國大使 이조형,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관련 표결기권 및 결의 채택 반대발언(회의석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정부는 NPT의 가입국으로 핵확산을 일관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함. -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과 IAEA·미국·한국간의 문제로 북한과 이들 3개 측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어야 하며, 중국정부는 압력 등의 수단을 반대함. <p>○ 한국 외무부 대변인, UN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는 UN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 NPT탈퇴 결정을 철회하고, 특별사찰수락을 촉구한 것을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함. - UN 안보리의 이번 결의는 북한핵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대한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5. 12		<p>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단호한 문제해결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p> <p>-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의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이번 결의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함.</p> <p>○ 『범민련』 미주 본부, 북한 핵문제 관련 성명 발표</p> <p>- 조·미간의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며, 이와 병행하여 북한의 NPT 탈퇴 문제를 해결해야 함.</p> <p>- 이를 위해 『조·미간 고위급 정치회담』의 개최가 필요함.</p>
5. 13	<p>○ 駐UN 북한대표부 次席大使 허종, 북한 핵문제 관련 IAEA에 대표단 파견 및 남북핵통제공동위 회담 재개 발언</p> <p>- 최근 방북한 IAEA 사찰단 활동과는 달리 별도로 IAEA와 핵사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측 대표단을 곧 IAEA 본부에 파견할 것임.</p> <p>- 지난 5.5과 5.10 2차례 개최된 미국과의 『북경 참사관접촉』을 통해 우리는 이미 미국측에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p>	<p>○ 미 국무부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 북한 핵문제 관련 논평(정례브리핑)</p> <p>- 북한 관리들은 현상황의 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북한은 5. 8 IAEA 사찰단의 북한 입국을 허용했음.</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5. 13	<p>고 있음을 밝혔음</p> <p>* 허종 차석대사는 북한이 『미·북한고위급 회담』, IAEA와의 협상과 함께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등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 남북대화의 재개를 시사함.</p>	<p>- 이것은 긍정적 사태발전이나, UN 안보리와 IAEA 이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완전한 핵안전조치협정 준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임.</p> <p>○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국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 『전기침』 한국 방문 발표</p> <p>- (일정): 5. 26~5. 29</p>
5. 14		<p>○ 김덕안기부장, 제161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에 『주변정세』 보고</p> <p>- '69년 KAL기 승무원 12명 등 총 441명이 북한에 납치되어 억류되어 있음.</p> <p>- 북한은 핵폭탄 1~3개 제조분의 Pu 비축</p> <p>○ 『NPT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5. 10~24, New York UN 본부)</p> <p>- (회의결과): 북한 NPT 탈퇴에 대해 거론, NPT 복귀 촉구 및 UN 안보</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5.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한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예비접촉』 개최(뉴욕) - (미측) 『카트만』 한국과장 (북측) 주유엔 북한대표부 부대사 김정수 	<p>리 대북결의를 지지함으로써, 『안보리』결의에 이은 NPT회원국들의 입장표명이 북한에 대해 2重의 NPT복귀 압력으로 작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장 김영남 印尼 訪問(5. 9~19, 5. 17 『알라타스』 外相과 회담) - 『미·북한 협상만이 핵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며, 안보리가 또 다른 대북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해 단호한 자위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기존입장 강조 및 印尼에 북한 지지를 요청 - 이에 대해 『알라타스』 外相은 NPT복귀를 추구하고, 『미·북한 협상을 지지하며 UN 안보리 내 비동맹 그룹에서 북한 핵문제가 협의되기를 희망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피력하는데 그침으로서 지지획득에 실패함.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인성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북한 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 제의 -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5.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쌍방 각기 2명의 고위급회담 대표가 참가하는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 개최를 제의 *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명단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 대북한 특별사찰 철회 시사(워싱턴 방문 중 The Atlantic Council 주최 기자회견) -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영변의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락해야 함. 핵개발과 관련하여 IAEA는 군사시설을 포함한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도 사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뿐 아니라 남한의 군사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그러나 『실질적인 사찰』이 보장될 경우 『특별사찰』이라는 명칭에 집착하지 않을 것임. - 북한에 있어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핵물질이 IAEA에 신고되고, 평화적으로 사용되거나 저장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됨.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한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제2차 『예비접촉』 개최(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 지역안보회의(싱가포르), 북한 핵문제 관련 성명 채택 -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 NPT 복귀와 IAEA 사찰 수용을 촉구.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원 총리 강성산, 『최고위급 특사교환』 제의 - (특사임무) : ① 쌍방 정상들이 만나는 문제와 ②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타결하기 위한 최고위급의 『중대한 뜻』을 전달 - (실무자 접촉) : 부부장(차관)급을 책임자로 하여 쌍방 각기 2명의 대표로 5. 31 통일각에서 개최. * 특사는 『각기 통일사업을 전담하는 부총리급』으로 지명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루치』 미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상원 외교위 東亞·太小委에서 『미·북 고위급회담』 관련 미측 입장 보고 - 미·북한 대화에서 북한의 자세변화가 나타날 경우 미국도 『적절한 상응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5. 27	<p>- 미국은 이번 미·북한 회담시 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동회담 성공시에는 양국간 정치·경제적 관계개선 등 여타 사안에 대한 토의도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측에 밝힐 것이나, 북한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UN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단행할 태세가 되어 있음.</p> <p>○ 駐UN 북한대표부 허종 부대사, 『미·북 고위급회담』 관련 『대미 6개항 요구조건』 제시</p> <p>- 동회담에서는 핵문제 뿐 아니라 미·북한간 『모든 현안문제』를 의제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안문제로서 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불사용 보장 ② T/S 훈련 중지 ③ 한국내의 미군사기지 공개 ④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 ⑤ 주한미군 철수 ⑥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존중 등 6개항을 제시</p>	<p>○ 전기침 외교부장, 한·중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p> <p>- 북한 핵사찰 문제는 북한과 IAEA 사이의 문제이므로 쌍방이 답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를 찾는 것을 희망함.</p> <p>- 영국·미국등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 문제를 UN 안보리에 넘기는 것도 찬성하지 않음.</p> <p>* 한중외무장관 회담: 5. 26~27, 서울</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5. 28	<p>○駐오스트리아 북한대사 김광섭, 핵문제 관련 북한측 입장 표명(내·외신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도 의사도 없으며, 나라의 최고이익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NPT 조약 규정에 따라 탈퇴한 것임. 3. 12 탈퇴선언은 6. 12 발효될 예정이며, 『불법적인 압력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는 한 NPT에 복귀치 않을 것임. - 영변지역 소재 문제의 2개 장소는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사찰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는 원칙상의 문제임. 우리는 대화를 통해 위기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미·북한 고위급회담』이 6. 2 개최될 예정임. - UN 안보리가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또다른 『새로운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임. 	
5. 30	<p>○ 『미·북한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장 강석주, 뉴욕 도착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조·미 회담』은 그 성격으로 보아 금후 두 나라 관계는 물론 국제정세 발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양측은 이 회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기대에 맞게 책임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에 있음. 	<p>○ 노동신문, 『미·북한 고위급회담』 개최 관련 논평 발표(성실한 회담 자세가 필요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미국이 회담을 우리에게 그 무슨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명분을 세우는데 이용하려 한다면 오산임.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93. 6. 2</p>	<p>○ 남북고위급 회담 수석대표 황인성, 『남북 당국간 실무대표접촉』 제의</p> <p>-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문제와 북측의 『특사교환』 문제를 함께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대표접촉』 (6. 5, 통일각) 제의</p>	<p>그 무슨 제재를 가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으로 밖에 달리 보지 않을 수 없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압력도 통하지 않으며 또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임.</p> <p>- 미국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미 관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에 서는 것이 필요함.</p> <p>- 미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냉전시대의 유물인 조·미 사이의 낡은 관계를 청산하려는 용의를 가지고 완화와 평화의 국제적 흐름에 맞게 대조선 정책을 시정하여야 하며, 조·미사이의 관계 문제는 『공정성과 국제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논의, 해결되어야 함.</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6. 3	<p>○ 박길연 주UN 북한대사, UN 제재조치시 『한국전쟁 재발』 발언(UN 안보리의장 『안토니오 야네스 바르누에보』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 탈퇴문제와 관련, 안보리가 『경제 제재조치』 등을 강행할 경우 파괴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올해 6월에 43년전의 6월(6.25전쟁)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람. 	<p>○ 김영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음. - 우리는 성실한 국제적인 노력과 남북한 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 함. - 북의 핵투명성이 보장될 때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적극지원할 것이며, 공존공영은 구체화될 것임.
6. 5		<p>○ 노동신문, 김영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비난 논평(“섰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다”는 것은 문민정권도 역대 남조선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민족 주체성을 상실한 알 속이 없는 존재에 불과함. - 외세에 의해 우리의 민족적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침해하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93. 6. 8</p> <p>6. 10</p>	<p>○ 강성산 북한 총리, 『최고위급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수락 촉구(전통문)</p> <p>* 특사교환시 『핵문제의 최우선적 협의·해결』 용의 표명</p> <p>○ 김광섭 駐오스트리아 북한大使, 『새로운 핵사찰 방법』 관련 발언(IAEA 본부 한국 기자단 회견)</p> <p>- NPT에서 탈퇴하더라도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결백성과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임.</p> <p>- 결백성 입증을 위한 『구체적 형식과 방법』에 대한 우리측 전문가들의 연구가 진행중으로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음.</p> <p>- 그 형식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나 NPT 미가입국이면서 핵의 투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아르헨·브라질』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임.</p>	<p>는 『강압조치』가 취해 진다면 그것은 조선반도 전체를 참화속에 늘어놓는 도화선으로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남조선의 문민정권 자체도, 온 민족도 대국들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6. 2 ~6. 11	<p>○ 미·북한 제1단계 고위급회담(뉴욕) 개최</p> <p>- 공동발표문(6. 11)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표명 ② 핵문제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 ③ 전면적인 핵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과 상대방 주권의 상호존중 및 내정 불간섭 ④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⑤ 북한의 NPT 탈퇴 유보 <p>- 회담대표</p> <p>(미측) 『Robert L. Gallucci』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하바드』 동아·태 부차관보 『포운만』 NSC 비핵담당 보좌관</p> <p>(북측)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김계관 외교부 순회대사 이용호 국제기구부 과장</p>	<p>※ 별첨 공동발표문 전문 참조</p>
6. 11	<p>○ 강석주 북한측 수석대표,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결과 관련 기자회견(뉴욕)</p> <p>- 이번 회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역사적 회담이며,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하여, 쌍방이 서로의 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핵위협을 하지 않을 데 대해 합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의 핵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근원이 무엇인가를 반영하고 있음.</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NPT에 남아 있을 것과 IAEA와의 담보협정을 이행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대한 기구의 불공정성으로 하여 매우 신중한 문제이며, 조·미 쌍방은 앞으로의 회담에서 기구의 불공정성 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하였음. - NPT 탈퇴결정 연기기간, IAEA의 사찰 문제는 전적으로 기구의 공정성에 달려 있으며, 이번 NPT 탈퇴연기조치는 조·미 공동성명 실현방도를 찾기위한 앞으로의 회담을 위해 취해진 것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는(NPT 탈퇴철회 여부) 회담결과와 IAEA의 공정성에 달려 있음. <p>○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유보하고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응해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우리는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NPT 체약국으로서 IAEA와의 핵안전조치협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남북상호사찰 실현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함. - 정부로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의혹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화해·협력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임. 	<p>○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북한 제1단계 회담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마땅히 직접적 연관이 있는 각측이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타당하게 해결되어야 함. - 미·북한 쌍방이 이를 계기로 더한층 적극적인 성과를 취득하기 위해서 원활하고 사실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협상을 계속하기를 희망함.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6. 15		<p>○ 러시아 외무부, 북한의 NPT 탈퇴유보 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황에서 북한의 NPT 탈퇴유보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향후 북한의 NPT참여를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IAEA의 국제핵사찰과 IAEA와의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해야 함. - 미·북한간 대화의 계속을 지지하며, 한반도에 대한 핵보유국가들의 『핵불사용 보장』이라는 문제가 의제에 포함된다면 러시아는 이러한 보장에 참가할 용의가 있음.
6. 16	<p>○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 대북 핵사찰 재개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11 뉴욕의 미·북한간 회담결과 북한의 NPT탈퇴 유보라는 긍정적 결과가 나온데 대해 환영함. - 이러한 발전적 견지에서 IAEA는 가까운 시일내에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키 위한 사찰의 계속 및 여타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재개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NPT 탈퇴유보는 IAEA와의 전면적(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IAEA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북한에 대한 사찰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함. ○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미·북한 회담』 관련 담화 발표 -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서 발단된 것이기 때문에 두나라 사이의 적대관계라는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 - 우리는 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자면 무엇보다도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상대방의 제도와 자주권을 인정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등 『근본적 정책조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음. - 이것은 40여년간의 조·미간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에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 - 회담에서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NPT에 복귀하지 않고도 우리나라와 주변환경의 실정에 맞게 핵전파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가장 합리적인 핵문제해결의 방도를 제시하였으며, 미국측도 이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비핵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담에서 미국측이 우리의 NPT 복귀문제를 제기한데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논의할 대상으로 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우리가 이번에 NPT 탈퇴 효력발생을 임시연기한 것은 조·미 공동성명에 담겨진 정책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계속토의하기 위해서임. - 우리가 NPT탈퇴의 효력연장기간과 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을 받는 문제는 IAEA의 불공정성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매우 신중한 문제』로 제기되며, 이로부터 조·미 쌍방은 앞으로의 회담에서 우리에게 대한 IAEA의 불공정성 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하였음. <p>’93. 6. 22 ○ 황인성 총리, 『특사교환』 관련 대북전통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도 『특사교환』을 실현시키자는 입장인 만큼, 남북 당국간 실무대표접촉에서 『핵문제에 관한 기초적 협의』와 함께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문제 협의』도 함께 병행할 수 있으리라 봄.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통일 5대 방침』 제의 20주년 평양시 보고대회(당비서 김용순 보고)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강조하고, 6. 11 미·북 공동발표문을 북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6. 25		<p>한과 미국사이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p> <p>○ 북한·이스라엘 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93. 6. 25, 북경 북한대사관 - (의제) : 북한의 금광 채굴 및 북한 missile 中東수출 문제 - (결과) : 이스라엘측은 북한의 對중동국가에 대한 미사일 수출의 중단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수락할 경우 이에 상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의함. <p>이에 대해 북한은 중동 국가들에 missile 수출 사실을 부인하고, 이스라엘 측에 북한의 『운산』 鑛山개발 참여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문제의 협의를 제의하였으나 양측 입장차이로 무산됨.</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6. 26	<p>○ 강성산 북한총리, 특사교환제의 무산 관련 담화 발표</p> <p>- “얼마전 남조선 집권자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한데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나타나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느니 한 것은 사실상 우리의 특사교환제의를 거부하는 언동이 었음”이라고 주장하고, 특사교환 무산책임을 우리측에 전가</p>	
6. 27	<p>○ 미·북한, 제2단계 회담 관련 예비회담 개최</p> <p>- 제2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개최 일정 합의(7. 14, 제네바)</p>	
7. 3	<p>○ 주창준 駐中 북한大使, 미·북 관계정상화 및 IAEA의 불공정문제 관련 발언(북경 기자회견)</p> <p>-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이 영원히 적대적인 분위기속에 있을 필요는 없음.</p> <p>-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공정한 핵사찰』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회담은 실패로 돌아갈 것임.</p> <p>- 또한, 지금까지 IAEA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지극히 불공정했으며, 우리는 『제네바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임.</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7. 7		<p>○ G7 정상회담 개최 (일시 및 장소: 7. 7~ 7. 9 東京; 7월 8일 10 개항 『동경 정치선언』 채택)</p> <p>- 북한에 대해 NPT 탈 퇴를 철회하고 IAEA 의 핵안전조치협정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 행할 것을 촉구(제6 항)</p> <p>- '95년 만료되는 NPT 의 무기한 연장을 희망</p>
7. 10	<p>○ 한·미 정상회담 개최(클린턴 대통령 방한 7.10~11)</p> <p>- 양국간 안보협력 문제에 관해 클린턴은 대한 방위공약의 준수 및 주한미군의 계 속 주둔 재확인</p> <p>-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p> <p>①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3대 목 표 견지 합의</p> <p>② 차기 미·북한 제2단계 회담(7. 14, 제 네바)시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필요 한 실제적, 구체적 조치 확보에 중점 을 둔다는 방침 확인</p> <p>③ 미·북한 접촉은 생산적인 한계내에서 계속될 것이며, 매 단계마다 한국과 긴밀한 협의·협조를 해 나갈 것임을 확인</p> <p>*북한의 지연전술시 추가조치 강구</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7. 12		<p>○ 북한, 미군유해 17구 미 국측에 인도</p> <p>* 1990년 이후 5회에 걸쳐 총 63구 인도.</p>
7. 14	<p>○ 미·북한 제2단계 고위급 회담 개최(제네바, 7. 14~19)</p> <p>- 공동발표문(7. 19) 내용</p> <p>① 6. 11자 미·북한 공동발표문의 원칙 재확인</p> <p>② 북한 핵문제의 최종적 해결의 일환으로써 경수로 도입 지지 및 이를 위한 협의 용의 표명</p> <p>③ IAEA 핵안전조치의 완전하고도 공정한 적용이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이룩하는데 필수적임에 대해 견해 일치</p> <p>④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IAEA와의 협상』과 『남북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 표명</p> <p>⑤ 향후 2개월 안으로 차기회담 개최</p> <p>- 회담대표 (미측) Gallucci 차관보 등 12명 (북측) 강석주 제1부부장 등 11명</p>	
7. 19	<p>○ 미·북한 제2단계 회담(제네바) 관련, 강석주 북한측 수석대표 현지 기자회견</p> <p>- 이번에 또다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 회담이 제네바에서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회담결과는 『전진적이며 생산적』이었다고 봄.</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와의 협상을 진행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며, 또한 우리는 기구와의 협상을 한번도 반대한 적이 없음. - 문제는 기구(IAEA)가 외부세력의 영향에 의하여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데 있음.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기구와의 협상에서 『불공정성 문제』를 기본으로 토의하자는 것임. -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빨리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당면하여 우리가 제기한 『정상회담』 개최준비를 위한 『특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특사접촉』에서는 핵문제를 포함하여 쌍방사이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토의되어야 할 것임. 	<p>○ 한국 외무부 대변인, 미·북한 제네바회담 관련 성명</p> <p>- 제네바 미·북한 접촉 결과 양측이 합의·발표한 내용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된다고 평가(전문별첨)</p>
7. 22	<p>○ 북한 외교부 대변인, 미·북한 제네바 회담 관련 기자회견(조선 중앙통신사)</p> <p>- 금번 제네바회담에서는 『핵불사용에 대한 법적담보』,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비</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7. 27	<p>하지 않겠다는 담보』, 『T/S 합동 군사연습의 종식』 등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실제로 제거하기 위한 문제들이 논의되었으며, 쌍방은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핵문제해결에 유익하다는데 합의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경수로 도입 제안을 내놓은 것은 핵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최대의지』를 보여 준 것임. - 우리의 현존 『흑연감속원자로』를 『경수로』로 바꾸는 문제는 기술 재정적 문제에 앞서 핵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근본적인 사태와 관련되는 『정치적 문제』임. - 만일 핵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수로 도입방안』을 외면하고 『순수 사찰 방식』 일면에 치중한다거나, 이른바 방법을 및 재정적 이유를 구실로 그 실현을 늦잡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기구의 사찰제도 방법을 통하여 그 어떤 『인위적 목적』을 추구하려는 속심으로 밖에 달리는 평가할 수 없음. - 조·미 쌍방이 『경수로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들을 포함하여 조·미사이의 『전반적 관계 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화담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 회담의 중요한 진전으로 됨. 	<p>○ 북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40돌 100만 군중 시위 진행(김일성 광장)</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7. 28		<p>○ James Woolsey 미 CIA局長, 하원 『국제안보·국제기구 및 인권소위원회』 청문회 증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 - 북한이 최소한 1개의 핵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Pu를 제조할 수 있었다는 지난번 평가는 여전히 유효함. - 금년 2월 증언에서 사정거리 1000km의 신형 missile(노동1호)이 개발단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북한이 재래식 탄두외에 핵·생화학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missile을 최근 실험한 바 있음을 확인함. - 북한은 구소련의 과학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한명도 채용하지 못했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胡錦濤 중국 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 북한 휴전 4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 - 『김정일 영도』를 언급하는 등, 김부자 세습 체제를 인정하는 발언을 함.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신문, 미·북한 제네바 회담 후속조치 관련 논평 발표 ① 남북대화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대화 진행에서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 실현임. - 특사교환이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질 때,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문제 등 여타문제의 해결이 가능함. ② IAEA의 북한 핵사찰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네바 회담에서 IAEA와의 협상용의를 표명한 것은 특별사찰을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IAEA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 - IAEA와의 협상진척 여부는 IAEA의 불공정성 시정여하에 달려 있음. ③ 對美 촉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핵불사용에 대한 법적 담보 및 핵무기 불배치 담보를 해야 하며, T/S 훈련을 종식시키는 등 자기의무를 실행해야 함. - 또한 『경수로 제공용의』를 표시한 이상 전제조건 없이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8. 3		<p>○ IAEA 사찰팀 방북 (8. 3~8. 10)</p> <p>- 안전조치 장비의 점검 및 교체를 위해 사찰팀이 방북하였으나, 북측은 『封印 점검활동』을 야간에 허용하는 등 사찰활동에 비협조적 행동을 취함.</p>
8. 4	<p>○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 수석대표 황인성 총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 제의</p> <p>- 미·북한 제네바 회담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남북회담』을 시작할 용의를 표명함에 따라, 핵사찰 규정 마련과 남북상호사찰 실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 10, 통일각에서 중단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의 재개를 제의</p> <p>*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 남측 대표단 명단 통보</p>	
8. 5		<p>○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정책검토위원회 개최(하와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p> <p>- 북한 핵문제와 연계해 '94 T/S훈련 실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8. 9	<p>○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핵통제 공동위』 개최 거부 및 『특사교환』 제의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위협하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T/S훈련, '93을지포커스렌즈훈련)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대화를 거부하고 문제를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임. - 핵문제를 북남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면 『국제공조체제』에 대해 입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며, 『국제공조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면 애당초 『북남핵통제공동위』라는 말조차 꺼내지 말아야 할 것임. 우리는 남측이 이 양자중의 어느 하나를 택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가 거듭 강조해 온 바와 같이 현시기 핵문제를 포함한 쌍방사이의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최고위급의 특사를 교환하는데 있으며, 실무급의 『핵통위』가 이미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형편에서는 이는 문제의 옳은 해결방도로 될 수 없음. 	<p>※ ① T/S 훈련등 모든 핵전쟁연습 중지 ② 국제공조체제 포기등 특사교환을 위한 2개 전제조건을 최초로 거론</p>
8. 14	<p>○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변인,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 촉구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S훈련 문제는 북한측이 핵무기개발 의혹 해소에 성실한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측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함.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8.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핵문제와 함께 남북간의 제반 현안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 	<p>○ 김영삼 대통령, 8. 15경 축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한다면, 핵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공동개발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설 것임. - 또한 남북 사이에 다양한 경제협력은 물론 북한과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도울 것임.
8. 18	<p>○ 통일관계장관회의, 핵문제 관련 정부입장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회담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핵문제와 함께 남북간 현안문제』를 북한측과 협의 - IAEA·북한간 협상이 재개될 경우, 남북 대화를 전향적 입장에서 추진 - 북한의 『경수로 도입』에 따른 기술적 지원 문제는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의 부분으로 다룰 수 있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8. 31	<p>○ IAEA·북한간 협상 개최(평양, 8.31~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IAEA의 불공정성 문제 등 기존 입장 고수, IAEA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 - 경수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간의 진전이 없음에 대해 불만 토로 - IAEA측은 『통상사찰 재개』, 『5MW원자로 연료봉 교체 검증』, 『불일치점 해명을 위한 추가사찰문제 협의』, 『비엔나에서 협의계속』 등에 합의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제2차 핵협상문제를 “검토하겠다”고만 답변, 추후 협상시기·장소 등에 관한 아무런 합의없이 종료 <p>* IAEA사찰단 : Bruno Pellaud 안전조치 담당 사무차장 등 5명</p> <p>○ Winston Lord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동아·태 정책 특별브리핑』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3대 정책기조』 및 북한 핵문제 관련 『원칙적 입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태지역 3대 정책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제부문에서는 역내 국가들과 다자적·지역적·쌍무적 차원의 협력 관계를 병행 추진 ② 안보문제에서는,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으로 남을 것이며 계속 전진배치 정책을 유지 ③ 역내 민주화 증진을 통한 경제발전과 지역안보 확보에 기여 - 북한 핵문제 관련 원칙적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북한 제3단계회담의 재개조건은 『IAEA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남북한간의 의미있는 대화』가 접촉재개의 조건인 바, 핵문제는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IAEA 및 유엔도 관련된 문제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93. 8. 31</p> <p>9. 1</p>	<p>② 현재 한국측이 남북대화에 탄력성을 보이는 만큼 북한측은 대화에 응해야 하며,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문제 등에 대해서는 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임.</p> <p>○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변인, 『최고위급 특사교환』 관련 담화 발표</p> <p>- 우리측 통일담당 부총리를 『특사』로 지정한 것을 철회(최고위급이 임명하는 임의의 급의 특사도 무방)</p> <p>- 『특사교환』 관련 회담의제 4개항 제시</p> <p>① 나라의 비핵화 문제</p> <p>② 긴장완화와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을 시급히 취할데 대한 문제</p> <p>③ 전민족 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한 문제</p> <p>④ 최고위급회담을 실현하는데 나서는 제반문제</p> <p>* T/S 훈련 등 동족을 반대하는 모든 적대적 핵전쟁연습 중지 및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개 요 구조건 공식제시</p>	<p>○ 『애스핀』 미 국방장관, 新군사전략 발표</p> <p>- 중동과 한반도에서 2개 지역 분쟁 동시 발발시 “동시대응·승리”(Win-Win)할 수 있는 전력 유지</p> <p>- 분쟁지역 대응전략은 분쟁발발시, 침공저지 → 증원군 투입 → 적섬멸 및 전략목표 장악 → 종전 및 안정확보의 4단계 작전 유지</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2	<p>○ 황인성 국무총리,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고, 그 밖의 남북간 주요현안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쌍방최고책임자가 임명하는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 - 9. 7, 통일각에서 『실무대표접촉』 개최 <p>○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 미·북회담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남조선 외무부장관은 북에 대한 UN 안보리의 제제조치가 필요하다는니, 북은 핵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니 하고 허튼 소리를 쫓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주둔군은 동북아에는 98,000명을 주둔시키면서, 한국에는 1개 육군사단, 1개 항공단을 주둔시키고 『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군사장비물자 사전배치를 추진 - 『오끼나와』 주둔 해외 원정부대 및 육군특수부대와 일본 주둔 『1.5 항공단』을 계속 유지하며, 『제7함대』는 서태평양을 초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93. 9.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미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때에 “핵문제에 끼어들 자격도 없는 자들이” 이 따위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조·미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어떻게 하나 회담을 파탄시키려는 가소로운 행동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음. - 남조선당국자들은 분별없이 날뛰지 말고 조·미회담이나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임. 우리는 앞으로도 조·미회담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임. <p>○ 『제네바 군축회의』 이철 북측 대표단장 연설</p> <p>① 핵시험 금지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 핵시험 금지조약』 채택 30돌이 되는 올해에 비로소 군축회의가 『전반적인 핵시험 금지조약』을 협상하기로 한 것은 역사적인 것임. - 우리는 지금 전면적인 핵시험 금지조약을 위한 협상을 지체없이 시작하여 1995년에 완성하자는 여러 대표들의 발기를 전적으로 지지함. - 지리적·시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 현대적인 전쟁수단들이 구비되어 있는 현실은 보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다무적 및 쌍무적 협정합의서』들의 효과성을 뚜렷이 강조하고 있음. 	<p>※ 제네바 군축회의의 중 요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시험을 완전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할 데 관한 다국적 회담을 시작할 것에 대한 결정을 채택 - 러시아를 비롯한 37개국 대표들은 『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도록 위임함.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② 미·북 제네바회담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네바회담의 의의의 하나는 우리측이 흑연감속원자로 체계를 『경수로 체계』 로 교체할 데 대한 제안을 내 놓은데 있음. - 이 제안은 우리에게 대한 핵의혹을 중국 적으로 해결하려는 최대의 의지 표시 로 됨. - 나라의 동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의 기술과 자원에 기초하여 오랜 기간의 고심과 막대한 노력을 바쳐온』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 투철한 제안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기 술·재정적 문제』이기에 앞서 핵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 가 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정치적 문제』로 됨. -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북남사이의 회담의 결렬은 협상의 전 진을 가로막는 《정치적 요인》들이 근 본적으로 제거됨이 없이는 응당한 결 실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조·미회담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의 근본적이고 중국적인 해결의 전망을 열어놓고 『조·미 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했음. - 『핵불사용에 대한 담보』, 『무력에 의 한 위협 중지』 등 공약들이 실천에 옮 겨진다면 조선반도에서 냉전의 산물은 영원히 가셔지게 될 것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8	<p>○ IAEA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 『IAEA·북한간 제2차 협의』 관련 電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협의는 외교관행에 따라 『빈』에서 개최 - 9. 25~10. 9에 IAEA 사찰팀의 북한 방문과 이 기간동안 기 신고된 핵활동에 대한 사찰의 계속성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임시사찰』과 『정기사찰』의 실시 및 IAEA 사찰팀에 대한 북한입국 비자 발급을 요청 <p>○ 북한 창건 45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강성산 총리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회담을 통하여 호상존중과 불가침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고 그 원칙들이 확인된 것은 반세기동안 지속되어 온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길로 됨. - 남조선 당국이 핵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화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벌이고, 『국제공조체제』를 운운하는 것을 대화상대방을 자극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을 지연시키며,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끌여가는 극히 도발적, 도전적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93. 9. 13</p>	<p>행위이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미회담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뜻으로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은 이제 더 이상 모순된 언행으로 대화상대방을 우롱하려 하거나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내외 인민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되며, 그러자면 우리의 『원칙적 요구』에 대한 태도부터 명백히 표시하는 용단을 내려야 됨. <p>○ Robert L. Gallucci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 방한(기간:9.9~9.13, 대통령 예방:9.11, 부총리 예방:9.13)</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부총리 예방, 북한 핵문제 협의 결과</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관련 활동은 핵의 평화적 이용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북한이 핵카드의 유용성을 유지하여 대미 정치협상으로 가기 위해 지연술을 쓰는 것을 한·미 공조체제로 대처, 방지함과 미·북한 3단계 회담은 IAEA와 북한과의 협의 진전과 남북간의 의미있는 대화진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재확인 - 미측은 북한이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 - 미·북한 3단계 회담이 개최된다면, 이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반드시 『완전해결』되어야 한다는데 합의 	<p>○ 미하원,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하원은 『FY94 국방수권법안』 심의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① 북한의 IAEA 안전조치 수락 거부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② 미대통령, 미우방국,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최단시간 내에 IAEA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③ 북한이 핵문제를 명확히 할 때까지 미국 및 우방국은 무역·금융·기타 경제적 혜택을 북한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15	<p>○ 제34차 미·북한 북경 참사관 접촉</p> <p>- 미측은 제3단계 미·북 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제네바회담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IAEA와의 협의 및 남북대화 재개를 북측에 촉구</p>	<p>○ 미의회 조사국(CRS), 북한 핵개발 관련 분석 보고서 발표("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p> <p>- 북한은 '84년에 건설을 시작했다가 한때 중단한 영변 소재 50MW 및 200MW급 원자로 2기 건설을 재개</p> <p>- 상기한 2기의 원자로 건설이 완료될 경우, '95년 까지 연간 15~20개의 핵폭탄 생산이 가능</p> <p>- '91.2 구소련 KGB가 작성한 북한동향 보고서는 북한이 『기폭장치』를 포함한 『원자장치』의 설계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분석</p>
9. 16	<p>○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이몽호, 제90차 IPU총회('93. 9. 13~18, 호주 캔버라) 기조연설</p> <p>- 우리는 『조·미회담』을 통해 핵무기 불사용에 합의했으며, 흑연감속 원자로를 경수로로 교체하는 문제를 제기하여 핵투명성을 분명히 했음.</p> <p>- 조·미 쌍방은 공동성명의 원칙에 준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위에서 성의있는 협상을 계속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가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됨.</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17	<p>○ 부속합의서 발효 1주년 관련,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대변인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는 북한의 핵문제임. - 우리는 핵문제 해결과 남북간의 주요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회담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해 놓고 있으나, 북한은 자기들이 요구했던 특사교환 마저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걸고 거부하고 있음. - 북한이 시비하고 있는 『군사훈련 중지 문제』는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는데 북한이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경우 신축성을 갖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미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공조체제 문제』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할 당시 북한 스스로가 국제핵시찰과 관련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우리는 북한이 특사교환에 따른 실무절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에 아무런 조건없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18	<p>○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남한 간첩선 북한영해 침투 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은 '93. 9. 16, 13:06경 황해남도 웅진군 제작리 앞 마합도 부근 우리측 해상에 간첩선을 침입시켜 우리측 해안연선 지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음. -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실로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사죄와 함께,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핵전쟁 연습을 중지』하고 『국제공조체제』를 추구하지 않을데 대한 명백한 태도표시를 지체없이 하여야 함. 	<p>※ 북한측이 간첩선이라고 주장하는 배는 우리측 어물운반선 『명복호』(1.5톤, 선주 최영기의 선원 1명 승선)로서 어물이송후 귀항중 나침판 고장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북측 경비정이 우리측 해군 고속정의 예인을 방해하고 납치한 것임.</p>
9. 20	<p>○ 갈투치 차관보, 미·북한 3단계 회담관련 대북서한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 제2단계 회담시 천명된 미국의 입장 (①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는 한에서 미·북한 대화의 계속 ② 추가 재처리 금지 ③ IAEA 안전조치의 확보 ④ NPT 잔류 ⑤ IAEA·북한간 협의 및 남북한 비핵화 선언 이행)의 재확인 - 안전조치상태의 유지와 성의있는 IAEA와 협의 및 남북대화 재개등이 있어야만 제3단계 미·북한회담이 가능 - 2개 미신고시설 특별사찰에 대한 IAEA·북한간 협의가 조속히 『비엔나』에서 개최될 것을 촉구 - 핵문제 해결시 T/S훈련 문제 등 북한측 우려사항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 지지 용의 표명 	<p>○ 중국 의회대표단 방북 (단장 : 『전인대』 상무 위 부위원장 왕한빈, 9. 13~20), 김일성 면담 및 최고인민회의 연설</p> <p>① 김일성 발언요지(9.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기술·자본도 없으며, 몇 개의 핵폭탄을 제조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임. - 미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날조된 주장을 유포하고 있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20	<p>○ 최학근 원자력 공업부장, IAEA·북한간 제2차 협의관련 Hans Blix 사무총장 앞 電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NPT 탈퇴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IAEA의 사찰은 단지 안전조치점검 장비의 유지 및 설치에 한정되어도 충분함. - IAEA사찰은 IAEA 불공정성의 해결 및 미·북한 양자회담의 진전여하에 달려 있으며, IAEA와의 협의재개에는 동의하나, 협의장소는 평양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도 중국과 같이 평화적 분위기를 원하고 있으며,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것이 일순간에 파괴될 것이나 우리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지 않을 것임. ② 왕한빈 단장 최고인민회의 만찬연설(9. 13) - 중국은 지난날과 같이 앞으로도 중·조친선을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 중국은 북한이 조선반도 정세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을 계속 지지할 것임. - 중국은 『남북대화』와 『조·미회담』 및 『한반도 통일』에 찬성하며,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주시할 것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21	<p>○ Hans Blix 사무총장,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문제 보고</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보고내용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의 최초신고내용과 IAEA의 사실 확인간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추가정보의 확보와 시설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길이 없음. - 지난주 본인 명의의 대북전문을 통해 '93. 9. 25~10. 9 사이에 임시 사찰(ad hoc inspection)과 일반사찰(routine inspection)이 이루어져야 하며, IAEA와 북한간의 2차 협의는 외교관례에 따라 『빈』에서 개최되어야 함을 북한측에 통보하였음. - '93. 9. 20 북한은 최학근 원자력공업부장 명의의 회신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특수한 상황”(current extraordinary circumstance)하에서는 IAEA의 사찰은 단지 안전조치점검장비의 유지 및 설치에 한정되어도 충분하며, IAEA사찰은 IAEA 불공정성의 해결 및 미·북한 양자회담의 진전여하에 달려있으며, IAEA와의 협의 재개에는 동의하나 협의장소는 『평양』을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해 '93. 9. 20 본인 명의의 대북전문을 발송하였으며, 동 전문에서 IAEA와 북한간에 체결된 안전조치협정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함과 북한의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IAEA 검증활동은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93. 9. 21</p>	<p>안전조치협정에 의거,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93. 9. 8자 대북전문에서 특별히 지적한 사찰활동(임시사찰 및 일반사찰)은 반드시 필요하며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as an integral whole)과, 이러한 모든 사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IAEA는 북한에 대해 협정불이행의 범위(the area of non-compliance)가 확대되고 있다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음을 통보 하였음.</p> <p>- 또한 동 전문에서 북한과의 제2차 협의는 IAEA 제37차 총회가 개최되는 『빈』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만약 제2차 협의를 통해 심도있는 협의를 포함하여 특정의 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IAEA는 또 다른 협의팀(제3차 협의)을 평양에 파견할 것임과 이에 대한 답변을 늦어도 '93. 9. 22(수)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음.</p> <p>○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변인, 특사교환관련 담화 발표</p> <p>- 남측이 진정으로 핵문제를 포함한 북남 사이의 증대한 현안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측 영해에 『간첩선』을 침투시키는 것과 같은 도발 행위를 하지 않을 데 대해서와, 우리가 이미 제기한 원칙적 문제들(① 모든 핵전쟁연습 중지 ② 국제공조체제 철회)에 대한 태도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신뢰성있는 대화의 상대임을 보여 주어야 함.</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남측이 특사교환 제의에 성의있게 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두가지 『원칙적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명백한 태도를 표명할 수 있도록 9월 30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한번 더 주려함. - 우리측은 남측이 우리의 요구에 성의를 보이는데 따라 오는 10월 5일에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 나갈 것임. <p>○ 북한 외교부 대변인, 미·북 제3단계 회담 관련 담화발표(중앙통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우리와의 제3차 협상과 관련하여 일방적이고 자위적인 조건을 설정하였음. -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으며,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회담방식에 인위적인 장벽을 설치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최근 합의한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음. - 이와 같은 조치중에는 NPT로 부터 탈퇴 보류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 - 미국은 우리의 핵발전 계획을 위한 경수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치 않고 있으나, 우리는 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설립한 핵발전 산업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경수로로 전환할 용의가 있음. <p>○ 북한 최학근 원자력공업부장, IAEA·북한 간 제2차 협의 개최동의 전문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사무총장 앞 전문(9. 20자 Blix 총장의 대북전문에 대한 답신)을 통해 	<p>※ NPT 탈퇴를 위협</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23	<p>IAEA와의 제2차 협의를 『빈』에서 개최 (10. 5~10. 8)하는데 동의</p> <p>○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문제의 IAEA 총회 상정 결의(GOV/2691) 채택</p> <p>결의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이사회 및 유엔안보리의 북한핵관련 기존 결의의 불이행 상태에 우려 표명 - 북한 핵문제를 제37차 총회의 추가의제로 채택 요청 - 사무총장에게 북한 핵문제관련 사무총장의 이사회 보고서 및 이사회 토의 기록을 총회에 전달 요청 <p>○ 북한 최학근 원자력 공업부장, IAEA·북한간 제2차 협의 취소관련 전문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국가들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결의안 채택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IAEA·북한간 차기협의를 저지하려는 계산된 조치로 보임. - 차기 IAEA·북한간 협의회가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IAEA 사무국이 협의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없고, 오히려 우리의 『최고이익』(Supreme interest)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압살하려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들의 정치적 음모에 IAEA 사무국이 또다시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p>※ IAEA 정기이사회: 9. 21~23</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24	<p>- 만약 금번 이사회에서 어떤 부당한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이는 『중대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사무국은 『합의된 비엔나 협의』 개최 및 『사찰장비유지를 위한 추가사찰』의 실현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임.</p>	<p>○ 북한 외교부 대변인, 『미·일 전역미사일 방위 체계(TMD)』 구축 관련 비난 담화</p> <p>- 최근 일본은 얼마전에 있는 우리의 『정상적인 미사일 발사훈련』과 관련하여 광란적인 소동을 벌이면서 반공화국 감빠니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음.</p> <p>- 오늘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일본 자신이 이러한 반공화국 책동에 앞장서서 합세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자기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며, 전적으로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임.</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 북한은 '93년 5월말 동해 대포동 미사일 시험장에서 북한의 장거리 유도무기(노동 1호) 시험사격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외교부 담화는 이와 관련하여 미사일(노동 1호)발사 사실을 최초로 공식 인정함.</p>
'93. 9. 24		<p>○ 중국, 주북한 신임대사에 『교종회』 임명</p>
9. 25		<p>○ 호소카와 일본 수상, 일·북한 수교협상 관련 국회 답변</p> <p>-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북한·일본 국교정상화회담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식되지 않는 한 對북한 국교정상화는 추진될 수 없음.</p>
9. 27	<p>○ Hans Blix 사무총장, 제37차 IAEA 총회에 북한 핵문제 보고</p> <p style="text-align: center;">[보고내용 요약]</p> <p>- 현재 북한 핵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획득한 Sample의 분석결과, IAEA에 보고되지 않은 핵물질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임.</p>	<p>※ 제37차 IAEA 정기총회: '93. 9. 27~10. 1</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봄 IAEA는 임시사찰 및 일반사찰 (ad hoc and routine inspection)에 더이상 장애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으나, 현재 이들 사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에 대한 협정불이행(non-compliance)의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만약 신고한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핵을 오로지 평화적 이용에 국한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더이상 확인할 수 없을 것이며, 오직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이며 時宜性 있는 안전조치이행만이 이를 보장할 수 있음. - IAEA는 북한이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그러나 북한의 최초보고와 IAEA가 발견한 사실과의 불일치가 신뢰할 수 있는 설명, 추가정보와 추가장소에 대한 방문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한, IAEA는 핵물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음. <p style="margin-left: 20px;">○ 김시중 과학기술처 장관, 제37차 IAEA총회 기조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 회원국간 지역원자력안전 향상을 위한 『원자력 안전협의체』의 설립을 제의함. - 우리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계속 의혹을 증대시키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함. 북한의 핵물질 보고서와 IAEA 사찰결과간의 불일치에 대한 규명 	<p style="margin-left: 20px;">○ 클린턴 미대통령, 제48차 UN총회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확산방지정책은 미국의 최우선 정책 중의 하나임. -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영구히 중단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미국이 선언한 핵실험 유예조치를 모든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수용하기를 촉구함. - 우리는 일부 국가들만 비준하고 있는 화학무기협정을 모든 국가들이 비준, '95년 1월 13일부터 동협약이 발효되기를 기대하며, 생물학무기협약과 미사일기술통제협약(MTCR)이 강화되기를 바람. <p style="margin-left: 20px;">○ 미·일본 국방장관 회담, 『노동 1호』 개발관련 전역 미사일방위 체제(TMD) 공동개발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스핀 미국방장과 일본 나카니시 게이스케(中西啓介) 日방위청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28	<p>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와 함께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에 대한 불이행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금번 총회에서 이 긴급한 문제를 협의해 주기를 요청하며, 북한 당국에 대해 핵안전조치협정과 IAEA 및 안보리의 결의문 이행에 대한 더 이상의 지연이 없기를 촉구함. -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상호핵사찰이 북한의 신뢰성 구축과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상호사찰에 관한 협정을 논의할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함. 	<p>장관은 미일안보실무회담(SSC) 산하에 실무 협의반을 설치, TMD 개발 문제 협의를 합의</p> <p>○ 미·일 정상회담 개최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개발 의혹이 東아시아 지역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의견 일치 - 북한 핵문제가 UN 안보리에 상정되어 제재 대상이 되기 이전에 모든 외교노력 전개 - 북한이 NPT탈퇴를 철회하고, IAEA 사찰을 수용토록 한·미·일간의 긴밀한 협력체제의 유지 합의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29	<p>○ 한승주 외무부 장관, 제48차 UN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협력이라는 전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긴장과 불신이 남북한 관계를 지배하고 있음. 남북한문제 진전의 실마리는 화해와 협력이라는 신국제질서의 맥락하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남북한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신질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우리는 특히 북한 핵문제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해소되어야 할 것임. - 북한은 안보리 결의 825호에 따라 NPT 의무를 준수하고 IAEA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해야 할 것임.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함. 우리는 북한 핵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음. IAEA와 역내국가들은 북한 핵시설 안전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9. 30	<p>○ 제37차 IAEA 총회 참석 북측대표단원 이성현, 기자회견 및 총회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회견) 우리의 NPT탈퇴는 이미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핵사찰 수용의무는 없음. - (총회발언) IAEA 이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기로 결의안을 채택(9.23)하여, 10월초로 예정(10.5~8, 빈)된 IAEA와의 2차협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10. 1	<p>○ 제37차 IAEA 정기총회, 대북결의 채택</p> <p style="text-align: center;">결의안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최근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상에 요구된 『예정된 임시사찰과 정기사찰』(ad hoc and routine inspection)을 거부함으로써 협정불이행의 범위(the area of non-compliance)가 확대되고 있음. -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IAEA와 즉각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함. - 제38차 정기총회 의제에 “NPT와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해 IAEA와 북한간에 체결된 협정의 이행”이라는 표제의 안전을 포함시킬 것을 결정함. <p>* 찬성 72, 반대2(북한·리비아), 기권 11 (전문별첨)</p>	
10. 2	<p>○ 강성산 총리,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측이 제기한 원칙적 문제(핵전쟁연습 중지·국제공조체제 포기)들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10. 5 판문점 통일각에서 회담 개최 제의 <p>* 회담대표 명단 통보</p>	<p>○ 한국 외무부 대변인, 제 33차 IAEA 정기총회 대북결의 채택 관련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는 93. 10. 1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즉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요지의 결의안을 압도적 다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10. 3		<p>수결로 채택하였음. 이 결의는 세계 117개국으로 구성된 IAEA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가 처음으로 직접 북한 핵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이 더이상 지체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함.</p> <p>- 우리는 북한이 하루빨리 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평화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국제의무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핵개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함.</p> <p>○ 남북군사공동위 김광진 북측위원장, 생화학무기 개발 관련 담화 발표</p> <p>- 남조선당국자들이 나라의 비핵화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을</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협의하게 될 북남특사 교환이 일정에 올라있고 그 성공을 위하여 우리측이 남측에 핵전쟁연습을 하지 않고 국제공조체제를 추구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애호적인 요구를 내놓고 있는 때에 있지도 않는 생화학무기 개발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대화 상대방인 우리 공화국을 비방 중상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전임.</p> <p>- 남조선통치배들은 저들의 부질없는 반공모략선전책동이 우리인민군 군인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나라의 긴장상태를 일층 격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임.</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10. 4	<p>○ 북한 외교부 대변인, 제37차 IAEA 정기 총회 대북결의 채택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조·미 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와 기구와의 협상도 한창 추진되고 있는때에 이처럼 우리문제와 관련한 결의가 채택된 것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저해하고 우리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밖에 달리는 평가할 수 없음. - 지난 시기 기구서기국과 관리이사회 일부세력들이 우리문제에 대한 결의를 난발해 낼때마다 박아놓곤 하던 특별사찰이요, 유엔제소요 하는 강압적인 표현들이 이번 총회결의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음. - 이와같은 기구총회의 결과는 지난 시기 우리에게 대한 특별사찰의 채택이요 뭐요 하면서 기세를 올렸던 기구서기국의 일부계층들의 『취약성』과 『부당한 행위』를 그대로 폭로해주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의 배경앞에서 기구는 더이상 우리의 핵문제 해결에 나설 그 어떤 명분도 체면도 없게 되었음. - 물론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를 존중하며 기구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에서 변함이 없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서방세력들에 추종하는 기구서기국의 일부계층들에 한한 것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10. 5	<p>- 기구의 이와같은 불공정성과 제한성 때문에 미국이 우리와의 회담에 나서게 되었으며 여기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문제가 토의되고 있음. 오늘의 실태는 핵문제가 오직 조·미회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 주고 있음.</p> <p>○ 『특사교환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접촉』 개최(판문점 통일각)</p> <p>- 북측이 특사교환의 『근본적 장애요인』인 2가지 요구조건(① 핵전쟁연습 중지 ② 국제공조체제 포기)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를 『사실상 전제조건화』 함으로써 합의사항 없이 종료 * (차기회담) '93. 10. 15, 평화의 집</p> <p>○ 제48차 UN총회 북한대표 송원호(외교부 부부장), 기조연설</p> <p>-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며, 핵무기 불보유는 물론 개발할 의사, 자금, 필요성도 없음. - 우리는 공정성이 보장될 경우 핵사찰을 반대하지 않음. - 핵불사용 보장, 무력위협금지, 흑연감속로의 경수로 대체등 미·북한 양자간의 합의사항 이행시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과 미·북한관계 개선 및 세계 평화에 획기적 진전이 가능함. - IAEA가 우리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는 부당한 것이며, IAEA는 더이상 북한 핵문제 해결에 나설 명분이 없음.</p>	<p>○ 중국, 제39회 지하핵실험 관련 성명발표</p> <p>- 1993년 10월 5일 중국은 지하핵실험을 실시했음. - 중국이 소량의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위를 위한 것임. - 지난 1964년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래 중국은 어느 시기,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음. - 중국은 또한 비핵국가 및 비핵지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같은 근거에서 라틴아메리카핵무기금지조약과 남태평양비핵화조약의 부속의정서에 서명했음.</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한반도와 주변에 배치된 핵무기의 철폐를 요구함.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만이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남북적대관계 해소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오는 96년까지 핵실험 전면금지조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임. -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우수한 핵무기 제조기술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마땅히 특수한 책임을 지고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활동을 제한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함. <p>○ 중국 외교부 대변인 오건민, 핵실험 관련 외신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할데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적극적인 일을 인정하고, 협의에 적극 참가하려함. -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 소유국들이 동시에 반성하고, 핵무기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용하지 않으며, 비핵국가와 비핵지역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 핵위협을 하지 않을 데 대한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함.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10. 9		<p>○ Gary Ackerman 미하 원 외무위 동아·태 위 원장, 방북</p> <p>- 북한의 “The Korean Foreign Affairs Asso- ciation”초청으로 방북, 10.10 김영남 외교부장 및 강석주 외교부제1 부부장과 아·태지역 정 세 및 미·북한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 10. 11 김일성과 면담함.</p> <p>-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 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 려와 미국의 조야 및 행정부의 의사를 김일 성에게 전달하고, 북한 핵사찰문제의 중요성과 3단계 미·북한 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남 북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p> <p>* 미국인으로서 최초의 관문점 경유 방한(9. 12~13)</p>
10. 11	<p>○ 최학근 원자력공업부장, UN사무총장의 제37차 IAEA총회 서한 관련 답화발표</p> <p>- 서한(9. 27자 갈리 UN 사무총장 명의) 은 우리의 핵문제를 겨냥하여, 핵전파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체가 자 기의 결심을 보여 주어야 한다느니, 『이</p>	<p>※ IAEA와의 협의중단을 선언</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10. 12	<p>라크』와 『북조선』의 도전을 취급하는 데서 얻은 경험은 필요하면 유엔안보리의 적극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강력한 국제적 제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느니 하면서 우리를 부당하게 걸고 들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표단이 10. 7 UN사무총장에게 확인결과, 이번에 UN사무총장이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보냈다고 하는 서한 전달 내용은 UN사무국과 IAEA대국의 일부 계층들이 공모·결탁하여 우리를 모해할 목적 밑에 고안해 낸 또하나의 『정치적 모략극』이었음. - 이번 서한 날조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핵문제가 처음부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며, IAEA 총회 결의가 정치사기꾼들의 비열한 협잡 놀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더는 부인하지 못할 것임. - 우리의 핵문제와 관련한 IAEA의 불공정성의 범위가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서한 날조극』까지 꾸며낸 것으로 하여, IAEA로서는 우리와 더이상 상종할 수 있는 자격도 체면도 없게 되었음. - 제반사실은 조·미회담을 통해서만 우리의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p>○ 『조 실즈』 UN사무국 대변인, 갈리 사무총장의 제37차 IAEA 총회 서한 관련 논평 발표</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10. 13		<p>- 9. 27 IAEA 비엔나 총회에 전달된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의 서한에 대해 『날조』 운운하는 북한측 주장은 넌센스이며, 갈리 사무총장을 대신해 『페트로프스키』 유엔 제네바 사무소장이 대독한 서한은 동일한 효력을 가짐.</p> <p>- 그러나 IAEA 총회에서 낭독된 갈리사무총장의 메세지 내용 가운데 북한을 “North Korea”로 표현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p> <p>○ 러·일 외무장관, 한반도 핵무기확산방지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p> <p>- 양국은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비확산에 관한 조약탈퇴 결정의 완전한 철회, IAEA와의 사이에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실천을 통해 북한 원자력계획의 성격에 관하여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 (전문별첨)</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10. 13		<p>○ 러·일 정상회담(東京)</p> <p>- 러·일관계에 관한 『東京宣言』 채택(핵관련 부분 제4항 전문 별첨)</p>
10. 15	<p>○ 『특사교환을 위한 제2차 실무대표접촉』 개최(판문점 평화의 집)</p> <p>- 북한측이 제1차 실무대표접촉시 주장한 특사교환의 『근본적 장애요인』 (① 핵전쟁연습 중지 ② 국제공조체제 포기)의 제거를 계속 주장, 합의사항없이 종료</p> <p>* (차기회담) '93. 10. 25. 통일각</p> <p>○ 미국무부, 『IAEA 안전조치의 계속성 중단』 및 『대북한 제재조치』 결정 가능성 시사(McCURRY 대변인 정례 브리핑)</p> <p>-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과 관련 2주일의 시한을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그러나 우리는 미·북한 회담이 IAEA와 북한간에 체결된 안전조치협정의 계속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p> <p>- 우리는 북한이 IAEA에 신고한 핵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IAEA는 『만약 그 시설들(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접근이 의무이행 시한(responsible period)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고 했으나 그것이 2주일의 시한인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음. 그러나 2주일 이후가 되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중요한 안전조치 정보의 유실이 클 것임.</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북한이 안전조치협정에 대해 협조할 것과 안전조치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IAEA의 사찰이 미·북한간의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우리는 북한과의 제3단계 회담은 반드시 남북한 협의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특별한 시한은 없으나 만약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의 계속성이 파괴될 경우, 이 문제는 우리가 또다른 협의와 직접적인 행동(further discussion and direct action)을 취하기 위한 유엔안보리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분명함. <p>○ 북한 외교부 대변인, 국제제재조치 관련 답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음. - 일본당국자들이 우리에게 대한 그 무슨 국제적 제재까지 운운하고 있는가 하면, 남조선 당국도 주체넘게 이에 합세하면서 못되게 나오고 있음. -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난관을 조성할 뿐 아니라 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로 이끌어 갈 수 있음. - 만약 일본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그 무슨 국제적 제재조치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천명한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해당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일본은 그 후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10. 17	<p>○ Hans Blix IAEA사무총장 방한(10.17~19, 10.19 인터콘티넨탈 Hotel 내외신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안보리는 본인에게 북한과의 협의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협의결과를 보고한 바 있음. 현재로서는 추가 보고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보고할 예정임. - 언론에서 『안전조치의 계속성 단절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임. 안전조치는 사찰단의 보고서, 현장방문, 감시카메라, 봉인장치 등이 포함된 전체적이고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미신고물질의 파악 및 동 물질의 전용(diversion) 여부에 대한 사전경고가 주목적임. - IAEA는 북한에 대해 지난 9월말에 사찰단을 파견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음. 그러나 동 제의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물질을 비평화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았다는 IAEA의 확신이 약화되고 있음. - 지난 봄까지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에 역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북한이 이미 신고한 내용 및 핵물질의 비평화적 목적 전용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일부 언론은 IAEA가 UN 안보리에 대 북한 제재요청을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IAEA는 단지 안전조치협정의 불이행을 안보리에 보고할 뿐이며, 『제재문제』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p>○ 러시아, 東海에 핵폐기물 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해상투기 전용선박이 『저준위 액체 방사성 폐기물』 900톤을 동해상에 해상방류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1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은 NPT 당사국으로서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안전조치는 핵물질의 전용(diversion)에 대한 조기경보역할과 미신고 핵물질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당사국의 공개성(openness)과 협조(cooperation)가 필요함. - 북한의 경우는 IAEA가 입수한 샘플 채취결과, 신고한 량보다 더 많은 량의 Pu를 추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양이 g단위인지 Kg 단위인지는 알 수 없음. - 따라서 IAEA는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핵재처리시설로 추정되는 2개의 장소에 대한 사찰을 요청하였음. - 이러한 요구가 북한에 의해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UN 안보리에 보고되었으며, 회원국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청한 UN 안보리결의의 일환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개시한 것임. <p>○ 노동신문, 『IAEA 불공정성』 및 『미·북회담』 강조 논평(국제원자력기구 불순계층의 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제37차 총회에서는 유엔사무총장의 이름을 도용하여 날조한 서한전달내용이 벌어졌으며, 우리에게 대한 부당한 결의가 채택되었음. - 사실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IAEA는 일부 불순계층의 조종과 음모에 의하여 자기 본래의 사명과 직능을 떠나 특정된 성원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모략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93. 10. 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욱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핵무기보유국들의 특권적인 핵독점권을 인정하는 반면에 비핵국가에게 일방적인 규제와 의무적인 사찰을 강요하는 불평등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 국제원자력기구가 비핵국가들에 대한 사찰에서 철저한 공정성과 엄격한 중립을 강조하는 것은 기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신뢰성을 좌우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요구로 나섬. - 이번 기구 제37차총회를 계기로 유엔사무총장의 이름을 도용하여 날조한 서한 전달 늑음까지 벌이면서 부당한 결의를 채택한 것은 기구의 이러한 불공정성의 극치로 되며, 이러한 제반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체도를 고립, 압살하려는 서방세력의 하수인 들 격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음. - 기구서기국 일부 계층의 이러한 불순한 행위로 말미암아 국제원자력기구의 권위는 크게 상실되었음. 그들은 저들 자신의 행동으로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다루는데서 기구의 치명적인 제한성과 불공정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으며,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도가 바로 당사자들의 협상인 조·미회담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줌. <p>○ 특사교환을 위한 제3차 실무대표접촉 개최(판문점 통일각)</p>	<p>○ 제165회 정기국회, 대북 결의문 채택</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93. 1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은 『북남 최고위급의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안)를 제시하였으나, 또다시 두가지 문제(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에 대한 우리측 태도표명을 요구, 특사교환의 절차문제 토의를 회피함으로써 실질토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아무런 합의사항없이 종료 * 차기회담:11월 4일, 평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10. 22 외무통일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수락 촉구 결의문』을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전문별첨) ○ 韓·中 외무장관회담 개최(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韓·中 양국의 공동노력 경주 합의 - 『동북아 다자안보협의회』 구성에 원칙적 의견 일치 - 『한·중 환경협력협정』 서명 및 서울과 북경의 양국 상주대사관에 양국간 군사문제에 관한 상설 협의채널 확보를 위해 '93년 12월 31일 내에 『武官部』 설치 합의 - '93. 11. 19 한·중 정상회담 개최 합의
11. 1	○ Hans BLix IAEA 사무총장, 제48차 UN 총회에 북한 핵문제 보고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관련한 주요 안전조치문제는 북한에 대한 IAEA 검증활동 결과 IAEA에 신고되지 않은 일부 핵물질이 북한에 존재한다는 사실임. - 따라서 안전조치협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핵물질에 관한 북한의 보고에 대해 IAEA는 정확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음. - 북한의 보고와 IAEA가 발견한 사실과의 불일치가 추가정보 및 추가장소에 대한 방문을 통해 만족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핵물질이 전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IAEA의 안전조치 점검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면적 안전조치협정에 대한 『불이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IAEA는 북한이 안전조치협정에 의거하여 제출한 핵시설 및 핵물질에 대해 사찰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음. 그러나 사찰활동은 『필수적 전체』(an intergral whole)로 이루어져야 되며, 피사찰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또한 IAEA는 북한과 신고되지 않은 장소 및 추가정보를 포함한 모든 안전조치와 관련한 현안문제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오직 IAEA 안전조치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하여 완전한 핵투명성의 실현만이 북한의 핵활동이 평화적 목적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신뢰성을 창출할 수 있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 駐UN 북한대사 박길연, 제48차 UN총회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성실한 노력과 NPT 탈퇴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한 환경을 무시하고, IAEA 사무국과 IAEA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은 UN현장의 목적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적으로 부당한 행위임. - 우리 대표단은 이러한 결정을 국제적 압력을 노린 음흉한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이를 단호히 배격함. - 결국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문제의 정치적·군사적 성격 뿐만 아니라 그 기원에 비추어 보아도 이 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 - IAEA 사무국과 이사회는 그들의 불공정한 행동으로 인하여 더이상 우리의 핵문제에 관여할 체면도 자격도 없게 되었음. -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IAEA를 존중하며, IAEA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임. - 우리는 한반도 핵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상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둘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 - 그러나 만약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결의안 채택이나 압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념과 결정에 따라 행동할 것임.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 제48차 UN총회, Hans BLix 사무총장 보고에 대한 결의 채택</p> <p>결의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리 결의 825호(93. 5. 11)와 더불어 NPT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적용을 위해 IAEA·북한간에 체결된 협정이행에 관한 IAEA 이사회 결의 2636호(93. 2. 25), 2639호(93. 3. 18), 2645호(93. 4. 1), 2691호(93. 9. 23)에 유의하는 동시에, 북한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협정불이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IAEA의 현장상 과업수행, 원자력 사용 진흥, 인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해의 최소화를 위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강화,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와 협조강화, IAEA 안전조치체제의 효율성 확보 등의 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국제협력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노력할 것을 촉구함. - IAEA와 북한간에 아직 유효한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IAEA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공정한 노력을 치하하고,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북한에 대해 IAEA와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함. (전문별첨) 	

부 록

목 차

1. IAEA 정기이사회 결의 (GOV/2636, '93. 2. 25)	127
2. 북한의 NPT탈퇴서 전문	
가.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 서한	129
나. NPT가맹국 외무장관 앞 電文	130
3. 북한의 NPT탈퇴선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성명	131
4. IAEA 특별이사회 결의 (GOV/2638, '93. 3. 18)	132
5. IAEA 특별이사회 결의 (GOV/2644, '93. 4. 1)	133
6. UN 안전보장이사회의장 성명 ('93. 4. 8)	135
7.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825호) ('95. 5. 11)	136
8. 미·북한 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장 강석주, New York 도착성명 ('93. 5. 31)	138
9. 미·북한 제1단계회담(뉴욕) 공동발표문 ('93. 6. 11)	139

10. 미·북한 제2단계회담(제네바) 미국측 언론발표문 (’93. 7. 19)	140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의 보도문 (’93. 7. 19)	141
12. 대한민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 (’93. 7. 20)	142
13. IAEA 제37차 정기총회 결의 (’93. 10. 1)	143
14. 러·일 관계에 대한 동경선언 (’93. 10. 13)	145
15. 한반도의 핵무기확산방지문제에 관한 러·일 공동성명 (’93. 10. 13)	146
16. 북한의 IAEA 핵사찰 수락 촉구 결의문 (’93. 10. 25)	147
17. IAEA보고에 대한 제48차 UN총회 결의 (’93. 11. 1)	149

1. IAEA 정기이사회 결의

(GOV/2636, '93. 2. 25)

이사회는

- (a)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와 북한대표의 발언을 고려하였으며,
- (b) 동 안전조치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감안하고(INFCIRC/403),
- (c) 북한측 신고내용과 임시사찰 및 샘플분석을 통한 사무국 조사결과간의 중대한 상이점이 광범위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규명되지 않고 있음을 심각히 유의하며,
- (d) 사무총장이 '93. 2. 9 동 안전조치협정의 특별사찰에 관한 제73(B) 및 제 77조에 의거 특정 추가정보 및 2개의 장소에 대한 접근허용을 북한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에 유의하며,
- (e) '92. 12. 이사회가 북한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동 안전조치협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또한 북한측에 대해 완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을 상기하며,

1. 동 안전조치협정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이행을 요청하고,
2. 북한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완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3. 이와관련 사무총장이 이미 취한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고,

4. 북한에게 IAEA가 동 안전조치협정하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IAEA에 전면적 협조를 제공할 것과, 사무총장의 '93. 2. 9자 추가정보 및 2개 추가장소에 대한 접근요청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체없이 응할 것을 요청하고,
5. 상이점 해소와 INFCIRC/403 준수여부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4항에 언급된 추가정보 및 2개 추가장소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고 긴급하다고 결정하고,
6. 사무총장에게 본결의안을 북한에 전달할 것과 본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본안을 본결의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한달이 내에 본안관련 재소집될 추가이사회를 통해 재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7. 본안을 계속 심의할 것과, 동안전조치협정 및 IAEA 헌장에 규정된 적절한 추가조치를 고려할 것을 결정한다.

2. 북한의 NPT탈퇴서 전문

가.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 서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나는 위임에 의하여 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특수한 사태가 우리나라에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10조 1항에 따라 1993년 3월 12일 이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알리는 바입니다.

미국은 남조선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계층과 일부 성원국들을 부추켜 1993년 2월 25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기구규약과 담보협정, 그리고 우리와의 합의를 어기고 핵활동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우리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개방을 강요하는 부당한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노골적인 강권행위로서 우리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한 초대국의 희생물이 되는 것은 물론 다른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위협과 내정간섭을 합법화 해주는 전례로 될 것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행위가 제거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 김 영 남

1993년 3월 12일 평양

나. NPT가맹국 외무장관 앞 電文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가맹국 외무장관들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1993년 3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음을 공식 통보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남조선과 함께 우리를 위협하는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과 일부 성원국을 부추켜 지난 2월 25일 기구규약, 담보협정,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맺은 합의에 반하여, 핵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의 군사기지를 개방토록 요구하는 부당한 결의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가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장해제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압살함으로써 우리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공공연한 강권행위입니다.

만약 그런 행동이 용인된다면 우리 나라가 한 초대국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 위협과 내부분쟁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선례가 될 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행동이 철회되었음이 인정될 때까지 귀국은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결정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져줄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 김 영 남

1993년 3월 12일 평양

3. 북한의 NPT탈퇴 선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성명

'93. 3. 12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3. 12성명은 범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미 남북간에 채택된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부속합의서 등 모든 남북 합의사항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한다.

북한이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부당한 구실로 핵무기비확산조약을 탈퇴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 포기는 한반도의 안정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남북간의 긴장고조와 국제적 제재에 대하여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제라도 핵무기비확산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2. 25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요청한 핵사찰을 허용하고 아울러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남북상호사찰에도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의 탈퇴선언 이후 야기할지도 모를 어떤 도발적 위협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경고한다.

4. IAEA 특별이사회 결의

(GOV/2638, 93. 3. 18)

이사회는

- (a) 1992년 5월 체결된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IAEA에 추가정보 및 2개의 추가장소에 대해 IAEA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북한에 촉구한 2. 25자 이사회 결의를 상기하고,
 - (b) 지금까지 북한의 긍정적 반응이 없음을 유감으로 여기며,
 - (c) 최근의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선언 및 동 탈퇴가 발효될 경우 북한의 안전조치협정에 미치는 의미(implications)에 유의하고,
 - (d) 북한의 NPT탈퇴선언이 IAEA가 북한이 제출한 핵물질에 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명백히 하려는 시점에 나왔다는 데 대해 우려하며,
1. 사무총장의 보고서(GOV/INF683)에 보고된 대로 이사회의 결의이행을 위한 사무국의 노력을 승인한다.
 2. 사무총장과 사무국에 대한 이사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북한의 안전조치협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무총장과 사무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3.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은 여전히 유효하고, 북한이 IAEA가 상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조치협정의 이행 검증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긴급한 것임을 확신한다.
 4. 사무총장에게 모든 적절한 접촉을 취해 대화와 노력을 계속해 줄 것과, 1993년 3월 31일 개최될 이사회에 2. 25이사회 결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계속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5. IAEA 특별이사회 결의

(GOV/2644, '93. 4. 1)

이사회는

- (a) '93. 2. 25자(GOV/2636) 및 '93. 3. 18자 이사회 결의(GOV/2638)를 상기하고,
- (b) 3월말까지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없음에 주목하며,
- (c) 사무총장의 보고(GOV/2643) 및 특히, 북한이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동 보고 12항의 사무총장의 결론을 고려하고,
- (d) 동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1. 사무총장의 보고에 의거, 북한이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
 2. 또한 동 협정 19조에 의거, IAEA가 안전조치협정 조건에 따라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로의 비전용 여부를 검증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3. 북한 '93. 2. 9 사무총장이 북한에 대해 요구한대로 특정 추가정보 및 2개 장소에 대한 지체없는 접근 허용을 포함한 협정불이행을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4. 헌장 12조 C항 및 동 협정 19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의 협정 불이행과 IAEA가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비전용 여부를 검증할 수 없음을 동 기구의 모든 회원국과 유엔안보리 및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한다.

5. 사무총장에게 이사회를 대표하여 상기 4항에 언급된 보고를 요청한다.
6. 사무총장에게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어떤 중요한 진전상황에 대해서 이사회에 계속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7. 이 문제를(IAEA에서) 계속 다루기로 결정한다.

6. UN 안전보장이사회의장 성명

'93. 4. 8

안보리이사국들은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구두 및 서면보고에 유의한다.

안보리이사국들은 또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10조를 언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의 서한이 첨부된 '93. 3. 12자 북한대표의 서한을 유의한다.

안보리이사국들은 현사태를 우려한다.

안보리이사국들은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중요성과 또한 동 조약가입국들의 조약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안보리이사국들은 또한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안보리이사국들은 동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하며, 특히 IAEA가 북한과 협의를 계속하고, 북한 핵검증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장한다.

안보리이사국들은 동 사태를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한다.

7.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825호)

'93. 5. 11

안전보장이사회는

- (a) 북한정부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의사를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93년 3월 12일자 북한외교부장 서한과 이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를 유감으로 생각하며,
- (b) 안보리 이사국들의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하고 특히, IAEA에 대하여 북한 핵사찰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계속하도록 권고한 '93년 4월 8일자 안보리의장 성명을 상기하며,
- (c)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절대적 중요성에 유의하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실행하는데 있어 IAEA 안전조치의 필수적 역할을 강조하며, 핵확산금지 노력의 진전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공헌을 재확인하며,
- (d)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상호사찰체제를 만들고 핵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공약 등을 포함한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상기하며,
- (e) 북한이 NPT 당사국이며 이 조약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 (f) 북한이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 내용에 따라 제한되어야 할 핵물질의 핵무기 또는 여타의 폭발장치로의 유용여부를 IAEA가 검증할 수 없다는 '93년 4월 1일자 IAEA 이사회 결의내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 (g) 북한이 밝힌 NPT탈퇴 동기가 조약상 근본적 문제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러시아 연방과 영국, 미국 등 조약 기탁국들의 4월 1일자 성명을 유의하며,
 - (h) 무엇보다도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에 관해 북한과 협의를 갖자고 권고·촉구한 IAEA 사무총장앞 4. 22자 북한의 답신을 유의하며, 아울러 북한이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용의를 표명한 사실에도 유의하며,
 - (i) 최근 북한과 IAEA간 협력관계 개선조짐과, 북한과 다른 회원국들간의 접촉전망을 환영하며,
1. 북한에 대해 '93년 3월 12일자 서한에 담긴 NPT탈퇴선언을 재고하고 NPT에 대한 이행의무를 재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2. 또한 북한에 대해 조약상 핵무기 확산방지 의무를 준수할 것과 IAEA 이사회의 '93년 2월 25일자 결의안에 명시된대로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3. IAEA 사무총장에 대해 IAEA 이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계속할 것과, 적절한 시기에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4.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이 이 결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문제해결을 촉진시켜 나갈 것을 권유한다.
 5. 안보리는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기로 결정한다.

8. 미·북한 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장 강석주, New York 도착성명

'93. 5. 31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미합중국 대표단과의 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방금 뉴욕에 도착하였다.

알려진 바와같이 핵문제를 비롯한 조-미 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다.

이번 조-미 회담은 그 성격으로 보아 금후 두나라 관계는 물론 국제정세 발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 회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기대에 맞게 책임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에 있다.

쌍방은 평등한 입장에서 진지하고 성의있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표단은 회담이 내용있고 결실있는 회담으로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탄생시킨 당사자로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성실한 입장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9. 미·북한 제1단계 회담(뉴욕) 공동발표문

(New York, 1993. 6.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뉴욕에서 정부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Robert L. Gallucci 국무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양측은 핵확산방지 목적에 부합되게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 ①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
- ② 전면적인 핵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과 상대방 주권의 상호존중 및 내정 불간섭
- ③ 한반도 평화적 통일 지지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서 양국 정부는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위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핵무기비확산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10. 미·북한 제2단계 회담(제네바)미국측 언론발표문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합의한 원문》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은 1993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단계 회담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1993년 6월 11일자 미·북한 공동발표문의 원칙들을 재확인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특히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위협보장 원칙에 대한 자기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존 흑연감속원자로와 그와 관련된 핵시설들을 경수로로 교체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미합중국은 핵문제의 최종적 해결의 일환으로써, 또한 경수로 설비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경수로 도입을 지지하며, 이를 위한 방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모색할 용의를 표명한다.

양측은 IAEA 핵안전조치의 완전하고도 공정한 적용이 강력한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이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안전조치와 관련한 현안문제와 기타 문제들에 관한 IAEA와의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를 표명한다.

또한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문제를 포함하여 쌍방간의 문제들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남북회담을 시작할 용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수로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들을 포함하여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현안문제들을 토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전반적 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2개월 안으로 다음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993년 7월 19일 제 네 바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의 보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과 미합중국대표단 사이에 합의된 원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과 미합중국대표단은 1993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단계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의 원칙들을 재확인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특히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원칙에 대한 자기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존 흑연감속원자로와 그와 연관된 핵시설을 경수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하여 인정한다. 미국은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의 일환으로써 경수로의 해결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경수로 도입을 지지하며, 그를 위한 방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탐구할 용의를 표명한다.

쌍방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담보를 완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강화하는데서 필수적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담보와 관련한 현안문제와 기타 문제들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문제를 포함하여 쌍방사이의 문제들에 대한 북남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를 의연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경수로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들을 포함하여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현안문제들을 토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전반적 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2개월 안으로 다음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993년 7월 19일 제 네 바

12. 대한민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

1993. 7. 20

정부는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북한 접촉결과 양측이 합의, 발표한 내용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

특히, 북한이 강력한 핵비확산체제의 유지 필요성을 수락하고, 핵의혹 해소를 위해 IAEA에 의한 전면적 안전조치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이 긴요함을 인정하면서, IAEA와의 협의뿐 아니라 남북접촉에도 응하겠다고 한 것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정부는 향후 북한이 이러한 국제적 의무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완전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특히 IAEA와의 협의 및 남북접촉에 적극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한·미 협조체제를 포함, 국제적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며, 남북접촉을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13. IAEA 제37차 정기총회 결의

1993. 10. 1

《핵무기비확산조약과 관련한 안전조치협정의 적용을 위해 북한과 IAEA 간 체결된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총회는

- (a) 이사회 의 지난 2. 25(GOV/2636), 3. 18(GOV/2639), 4. 1(GOV/2644) 및 9. 23(GOV/2691)자 결의를 상기하고
 - (b) 사무총장의 이번 37차 정기총회 보고서 내용에 주목하며
 - (c) 동시에 북한 핵문제를 IAEA사무총장이 안보리에 보고토록 요청한 지난 5월의 안보리 결의 제825호를 환기면서
 - (d) 이상의 결의들의 핵심적 내용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현재까지 유효한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의 이행을 위해 이사회와 사무총장, 사무국이 벌여온 공정한 노력과 지금까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
 2. 북한측이 안전조치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서 나아가 최근 협정의무사항인 예정된 임시사찰과 통상사찰도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협정불이행의 범위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3.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4. 차기 제38차 정기총회에 “NPT와 관련한 안전조치협정의 적용을 위해

북한과 IAEA간 체결된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라는 표제의 안건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결정한다.

14. 러·일 관계에 대한 동경선언

1993. 10. 13

(~중략)

4. 일본 총리 및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군비관리 및 군축 분야에서 지금까지 달성된 성과를 환영하고, 그 성실한 실시 필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과정을 한층 더 촉진하여 不可逆的인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한다.

쌍방은 핵무기 해체 및 그것에 동반한 핵물질의 저장, 관리 및 처리문제가 전세계 안전보장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함과 동시에 이들 분야에 있어서 협력할 의사를 확인한다.

쌍방은 또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세계적 규모에 있어서, 특히 주변제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더욱 검토하기 위하여 러·일 合同作業委員會를 통하여 긴밀히 협의하여 갈 것에 동의한다.

쌍방은 1993년 1월 파리에서 화학무기 금지에 관한 조약이 서명된 것을 환영함과 동시에 이 조약에 가능한 한 다수의 나라가 참가토록 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를 표명한다.

쌍방은 또한 대량파괴무기 및 이것들의 운반수단과 관련 기자재, 기술 및 지식의 비확산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고, 재래식무기의 이전에 관한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갈 것에 동의한다.

15. 한반도의 핵무기확산방지 문제에 관한 러·일 공동성명

1993. 10. 13

하타 일본외상과 A. V. 코지레프 러시아연방 외무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핵무기확산방지 문제와 관련한 강한 우려를 함께 한다.

쌍방은 NPT조약 체약국으로의 잔류와 함께 북한이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포함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북한의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합치된다는데 견해를 같이한다.

쌍방은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결정의 완전한 철회, IAEA와의 사이에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실천을 통해 북한 원자력계획의 성격에 관하여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6. 북한의 IAEA 핵사찰 수락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국회는

- (a)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동북아의 안위를 위태롭게 함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데 유념하고,
- (b) 북한이 1985년 12월에 가입한 핵무기비확산조약상의 의무인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계속 거부하면서 1993년 3월 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를 선언한 것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크게 증폭시켰음에 유의하고,
- (c)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상호핵사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 (d) 1993년 5월 18일 대한민국국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기하고,
- (e) 북한에게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해 온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와 총회, 그리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반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가 취해온 모든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북한은 한반도 통일 여건조성을 위하여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2.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상호 사찰을 위한 규정제정에 필요한 남북한 협의에 즉각 응하라.
 - 3.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제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국제사회에 엄숙히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4.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임시사찰 및 일반사찰과 특별사찰을 수용하여 협정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993년 10월 25일 대한민국국회

17. IAEA보고에 대한 제48차 UN총회 결의

'93. 11. 1

유엔총회는,

- (a) 총회에 제출된 IAEA의 1992년도 보고서를 접수하고,
- (b) 1993년도 IAEA의 주요활동에 관한 추가정보를 제공한 IAEA 사무총장의 93년 11월 1일 연설에 유의하며,
- (c) IAEA 헌장에 명시된 것과 같이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IAEA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 (d) 개도국이 원자력을 자신들의 경제개발에 이용할 뿐 아니라 핵기술을 평화적 목적에 사용하는 등,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혜하기 위하여는 IAEA의 기술원조가 특별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 (e) IAEA에 의하여, 혹은 그 요청이나 감독, 통제등에 따라 제공되는 원조가 군사적 목적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또한 NPT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여타 국제조약, 협약, 협정상 안전조치조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IAEA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 (f) 더 나아가 원자력 발전, 원자력 기술의 적용, 원자력의 안전성, 방사능 보호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개도국을 원조하기 위한 조치등과 관련된 모든 IAEA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 (g)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인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 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 (h) 이라크의 핵비확산 의무불이행에 대한 IAEA의 성명과 조치를 유의하며,
- (i) 안보리결의 825호(93. 5. 11)와 더불어 NPT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적용을 위해 IAEA·북한간에 체결된 협정의 이행에 관한 IAEA이사회결의 2636호(93. 2. 25), 2639호(93. 3. 18), 2644호(93. 4. 1), 2691호(93. 9. 23)에 유의하는 동시에, 북한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 (j) 방사성 폐기물의 국제적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AEA총회 614호 결의, 원자력안전협약의 조기체결을 통한 안전성 강화에 관한 615호 결의, 음식물 투사(food irradiation) 방식을 개도국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616호 결의, 식수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계획에 관한 617호 결의, IAEA의 주요활동을 강화하는데 관한 618호 결의, 안전조치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강화하는데 관한 619호 결의, NPT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적용을 위해 IAEA와 북한간에 체결된 협정의 이행에 관한 624호 결의, 아프리카 비핵지대화에 관한 625호 결의, 이라크 관련 687, 707, 715호 유엔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관한 626호 결의, 중동에서의 IAEA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627호 결의 등 제37차 IAEA총회에서 1993. 10. 1에 채택된 IAEA 결의들을 명심하며,

1. IAEA보고서에 유의한다.
2.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IAEA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다.
3. Hans Blix 박사가 IAEA 사무총장으로 재임명된 것을 환영한다.
4. 원자력 사용의 진흥, 인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협의 최소화를 위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강화,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와 협조 강화, IAEA안전조치체제의 효과성과 효율성 확보등 IAEA의 현장상과업수행 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국제협력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5. 안전조치체제 강화를 위한 IAEA의 결정을 환영한다.
6. 또한 기술원조와 협력활동 강화를 위한 IAEA의 결정을 환영한다.
7. 현재까지 유효한 IAEA와 북한간의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IAEA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공정한 노력을 치하하고,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IAEA와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8. 또한 안보리결의 687호('91. 4. 3), 707호('91. 8. 15), 717호('91. 10. 11)를 이행하기 위한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치하하고, 안보리결의 715호에 따른 '감시장치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무총장의 노력을 지지한다.
9. IAEA 활동에 관한 제48차 총회기록을 IAEA사무총장에게 전달토록 UN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북한 핵문제관련 주요일지

(통정 93-11-76)

1993년 11월 23일 인쇄

1993년 11월 24일 발행

발행처 통일원 통일정책실

인쇄처 국제교역문화사
